

도 보

전라남도 도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제 2015-50호

2015년 10월 29일 (목)

발행 : 전라남도 / 편집 : 대변인실
홈페이지 www.jeonnam.go.kr



전라남도
Jeolla Namdo

우)534-700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
전라남도 도보편집실 ☎ 061-286-2073

목 차

◆ 고 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316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317호	광양 익신 일반산단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318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인가 고시

◆ 공 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73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0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4호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7호	공시송달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8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9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90호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공고 제2015-891호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 시군행정

순천시 공고 제2015-139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나주시 고시 제2015-139호	세목 고시
나주시 공고 제2015-1018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 열람 공고
광양시 고시 제2015-20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소로 2-174호선) 사업 실시계획인가 고시
광양시 공고 제2015-176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15-1776호	광양 도시계획시설(대로 3-6호선)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공람 공고
곡성군 고시 제2015-67호	곡성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영암군 고시 제2015-59호	영암 성기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무안군 공고 제2015-685호	무안 군계획시설(경관녹지9)사업 공사완료 공고
함평군 고시 제2015-78호	함평 군관리계획(유원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영광군 고시 제2015-125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영광군 고시 제2015-126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영광군 공고 제2015-529호	영광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전라남도 고시 제2015-316호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순천시시장			
	주 소	전남 순천시 장평로 30			
사업시행의 목적 및 기본방향	순천시 조례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로 방류수역의 수질오염 방지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위 치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동덕연동 일원			
	면 적 (㎡)	하수관거 L=22.4km 중계펌프장 2개소	처리장부지	해당 없음	
			처리용량	〃	
			처리공법	〃	
인가하고자 하는 시설의 종류 및 명칭	종 류	공공하수도(하수관로)			
	명 칭	순천 조례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정배수구역 및 예정하수처리구역	2.4km ²				
사업시행기간	2015. 10. ~ 2017. 12.				
수용또는사용할 토지의 지번, 지목, 소유자 및 권리의명세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소 유 자	지적면적 (㎡)	편입 면적 (㎡)
	순천시 덕암동 140-10	대	국토교통부	219	4
	순천시 해룡면 남가리 766-10	주	수경특주유소	286	4

※ 관계 도서 공람장소 : 순천시 하수도과(061-749-6508)

전라남도 고시 제2015-317호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승인 고시

전라남도 고시 제2015-299(2015. 10. 8.)호로 변경 승인 고시된 광양 익신 일반산업단에 대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관리기본계획 승인·고시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I 산업단지 개요

1. 관리기관 : 광양시장

2. 조성목적

- 광양시는 단위 공장으로서 세계최대를 자랑하는 광양제철소와 국내 최초의 계획형 신항만인 광양 컨테이너부두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중심지로서 전략적 입지를 차지하고 있으며, 21세기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로 부상하는 산업도시의 위상 정립
- 광양시 산업단지 개발현황은 국가산업단지를 제외하고는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현재 산업단지 또는 공장용지로 조성된 지역은 9%에 불과한 실정으로, 공장부지에 대한 수요가 부족한 상태
- 따라서 도시계획상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남측으로 초남산업단지와 연접해 있는 대상지를 산업단지 개발계획수립을 통한 계획적인 산업단지로 조성할 필요성이 대두

3. 조성근거법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4.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익신리 일원

나. 면 적 : 473,158㎡

5.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가. 개발기간 : 2008년 ~ 2015년(환지처분완료일)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환지방식)

II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1. 관리 기본 방향

- 가. 21세기 동북아 물류 경제권의 중심지로서 광양의 장기발전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 나. 산업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합리적인 업종배치로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 다. 입주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활동 및 관리업무의 전문화로 산업단지 관리를 체계적으로 유도

2.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구 분	면 적(m ²)	구성비(%)	비 고
계	473,158	100.0	-
산업시설구역	348,039	73.6	공장용지
지원시설구역	17,143	3.6	지원시설
공공시설구역	82,571	17.4	도로, 주차장, 수도시설
녹지구역	25,405	5.4	공원, 녹지

3. 입주대상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가. 입주대상업종

1) 산업시설구역

구분	입주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업 종 명
일반제조업(C)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의약품제외)
	C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C28	전기장비 제조업

※ 상기업종에 적합하더라도 공해유발업종, 용수다소비 업종 등 관리기관이 산업단지 입주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를 제할 할 수 있음.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

나. 입주기업의 자격

1) 산업시설구역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 이라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18호 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로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당해 산업단지의 유치업종으로 지정된 산업
- 당해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법규에 의한 인·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
- 조성토지의 처분계획에 의한 수의계약 공급대상자
- 입주기업은 모든 유해오염물질에 대한 배출량을 제출하고,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의 경우 입주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마련하여 계약조건에 명시
 - 특히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포름알데히드, 니켈, 카드뮴, 비소, 벤젠 등 5개 항목은 다음의 임계배출량을 근거로 총 배출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및 미배출업체 내에서 입주를 허용함

<입주제한 대상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임계배출량 산정결과>

구분	물질	발암성				
		포름알데히드	니켈	카드뮴	비소	벤젠
신금일반산업 임계배출량		0.0011g/s (35kg/년)	0.0012g/s (38kg/년)	0.00004g/s (1.3kg/년)	0.00030g/s (9.5kg/년)	0.0344g/s (1,084kg/년)

※ 임계배출량은 위해성평가 예측농도가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최대 누적배출량을 의미함(배출량 산정 및 예측결과 “광양 와우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포함) 위생·공중보건, 2013.7, 광양시”, “광양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보완), 2013.11, 광양시” 참조)

2) 지원시설구역

-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용도의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산집법 제2조 제12호 규정의 지원기관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 산집법 제38조에 따라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

다. 입주 우선순위

1) 산업시설구역

- 1순위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본사와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체(공고일 현재 본사와 공장의 소재지가 수도권인 기업체)로 공장등록을 필한 기업
- 2순위 : 광양시 및 전라남도과 MOU를 체결하거나 입주 추천을 받은 업체로서, 입주면적 및 고용창출효과가 높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높은 기업
- 3순위 : 계획적인 도시건설을 위하여 개별입지공장을 익신산단으로 이전 또는 확장하려는 광양시 관내 기업

※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해 선정

2) 지원시설구역 : 경쟁입찰 낙찰가격 순위(산업법시행령 제40조 제6항 제3호)

4. 산업단지의 용지의 용도별 구역에 관한 사항

가. 용도별 구역면적

(단위 : m², %)

총면적	산업시설 구역	지원시설 구역	공공시설구역			
			소계	도로	녹지 및 공원	기타
473,158	348,039	17,143	107,976	70,122	25,405	12,449
(100.0)	(73.6)	(3.6)	(22.8)	(14.8)	(5.4)	(2.6)

※ 산업시설구역은 토지이용계획 변동없이 입주가능 업종으로 세부용도 구분

나.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1) 산업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산집법 제2조 제18호 규정에 의한 제조업,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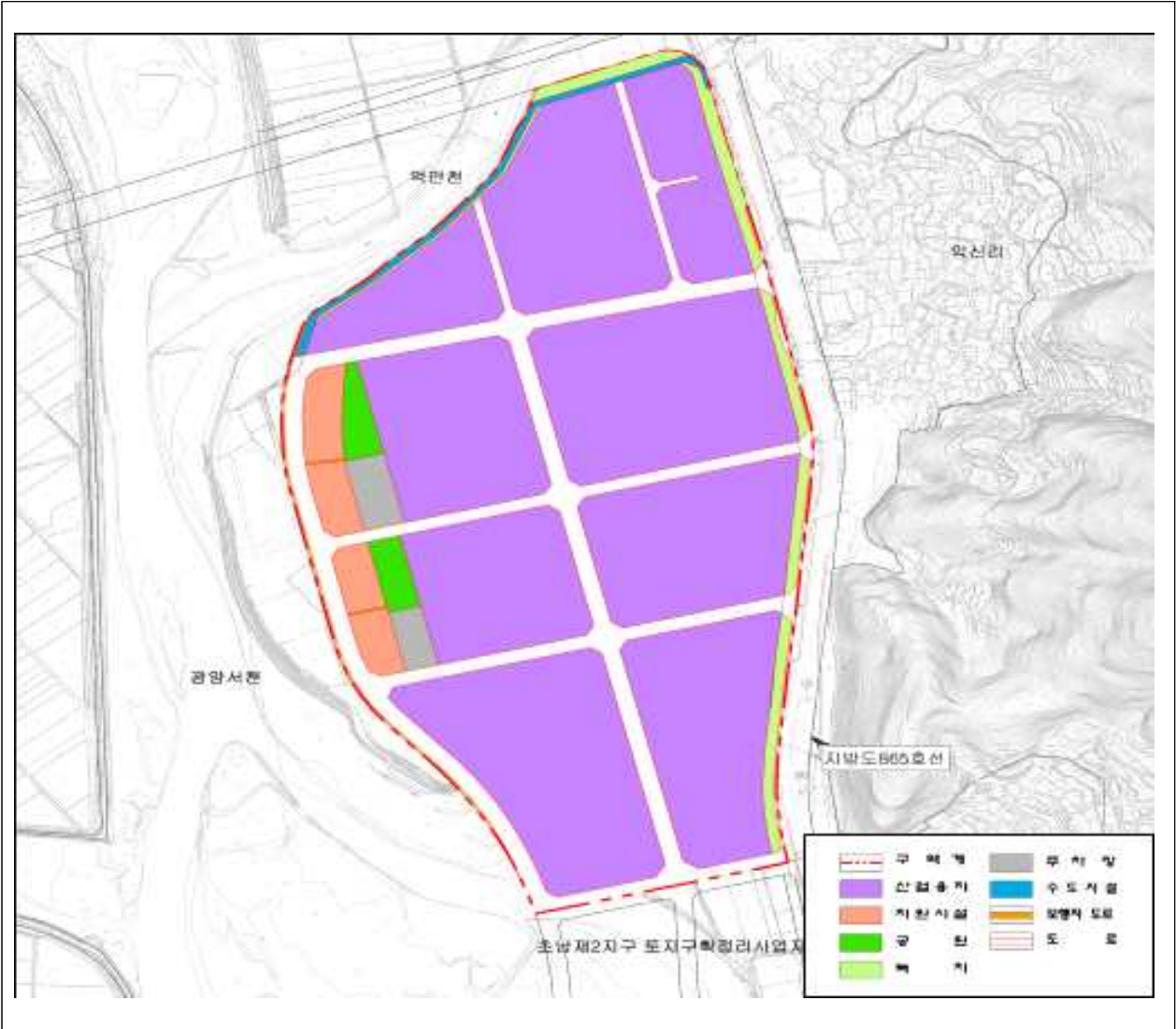
2) 지원시설구역

- 산집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
- 산집법 제2조 제8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등의 건축물과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로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얻어 설치하는 건축물

3) 공공시설구역

-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용 건축물과 관련시설 및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과 관련시설

다. 용도별 구역도



5. 업종별 공장의 배치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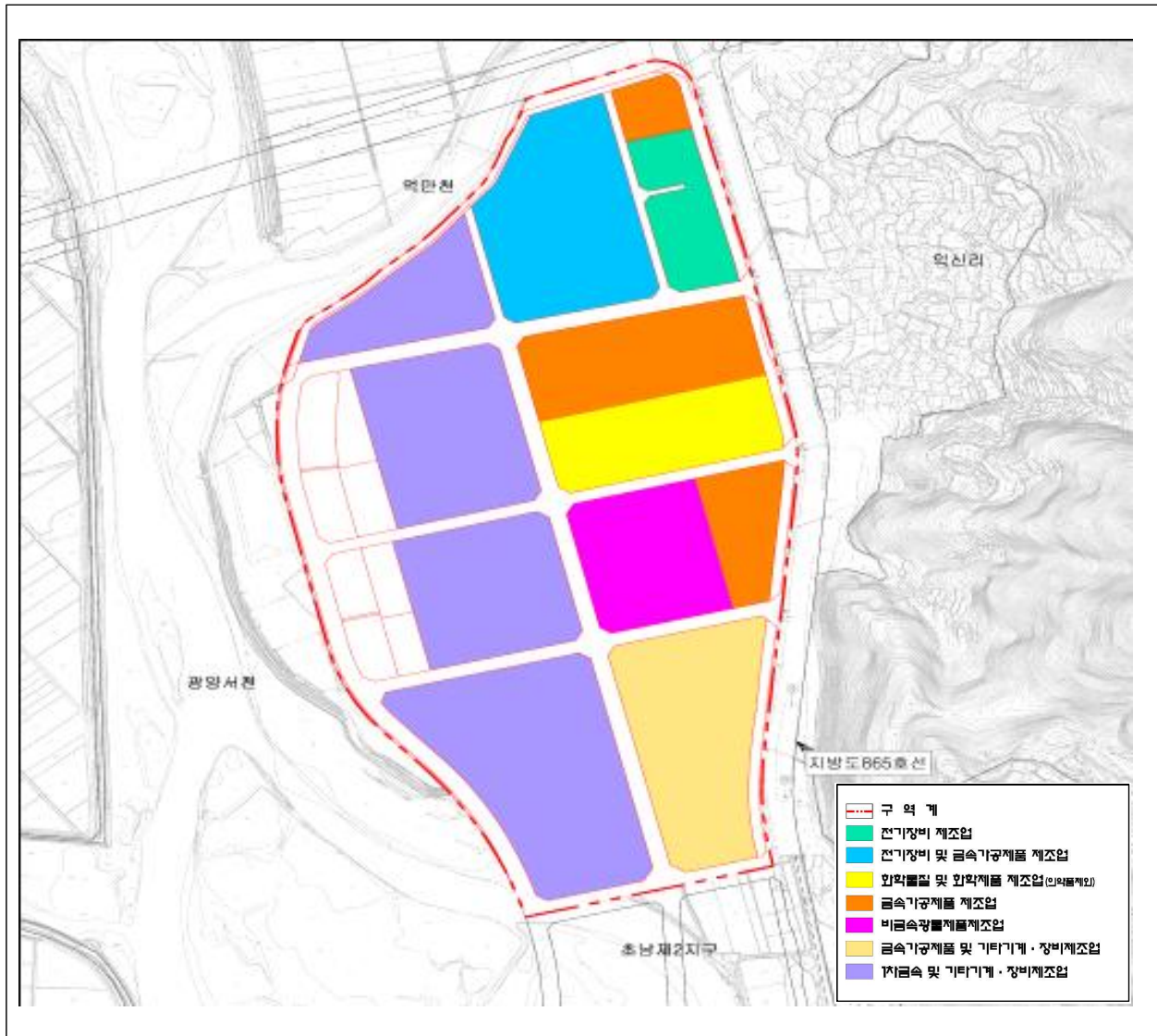
가. 업종별 배치면적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합 계	348,039	100.0	
전기장비제조업	16,091	4.6	
전기장비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43,188	12.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의약품제외)	26,184	7.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48,612	14.0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27,214	7.8	
금속가공 및 기타기계장비제조업	42,102	12.1	
1차금속 및 기타기계장비제조업	144,648	41.6	

나. 배치기준

- 환경적 측면(대기, 수질, 소음, 진동)을 고려하여 배치
- 상호연관 업종별로 집단화 및 협업화를 고려하여 배치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측면 고려

다. 업종별 배치계획도



6. 지원시설의 설치 및 오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지원시설구역은 입주기업체 사업지원 및 근로자 후생복지 활동측면 고려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 및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 설치운영

나. 오·폐수처리시설에 관한 사항

- 오·폐수는 사업체별로 1차 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하여 광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

7. 그 밖에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가. 분양계획

(단위 : m²)

구 분	총면적	분양 가능면적					조성 기간	사 업 시행자
		분양	미분양			계		
			조성	미조성	소계			
합 계	473,158	91,228	-	273,954	273,954	365,182	2008 ~ 2015	광양익신일반 산업단지개발 사업조합
산업시설용지	348,039	91,228	-	256,811	256,811	348,039		
지원시설용지	17,143	-	-	17,143	17,143	17,143		
공공시설용지	82,571	-	-	-	-	-		
녹지용지	25,405	-	-	-	-	-		

나. 입주계획

(단위 : 개사, m²)

구 분	입주업체수(예정)			면적		
	계	제조업	기타	계	제조업	기타
향후계획	59	36(14)	23	365,182	348,039	17,143

※()은 현재 입주 운영중인 업체임.

다. 입지여건(기반시설)

시설명	기반시설 현황(계획)
도 로	- 주진입도로는 국도865호선, 남해고속도로를 이용 광양C를 경유해 사업대상지로 접근 - 단지내도로(12개 노선) L=3,910m, B=3-35m, 면적: 70,122㎡
용 수	- 용수량 : 2,092㎡/일 (공업용수 : 1,882㎡/일, 생활용수 : 210㎡/일)
전 력	- 전력공급계획 : 154,639MWh/년 - 광양변전소에서 공급예정
통 신	- 통신공급계획(KT 광양지점에서 공급예정) : 159회선
환 경	- 폐기물처리계획(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 : 1,250.04톤/일 - 하수처리계획 · 단지배출량 : 819㎡/일(공업폐수 : 631㎡/일, 생활오수 : 187㎡/일) · 사업체별로 1차처리 후 오수관로를 통하여 광양 하수종말 처리장에서 처리

라. 분양공고 : 2015년 10월

8. 사후관리계획

가. 목 표

- 산집법, 산업단지 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의거 산업단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도모

나. 세부관리계획

1)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내 분양용지는 산집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분양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는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코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산집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매수신청을 받아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양도할 수 있음
-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
- 경매 기타법률에 의하여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고, 법정 기간내 계약 미 체결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 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산집법 제42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 해지
- 산집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제2항에 의한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분할기준 면적은 1,650㎡이상으로 한다.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내용과 산업단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수질, 대기,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등을 위하여 지방환경관리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내 적정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
- 산업단지내 공원과 차단녹지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에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근로자와 주민에게 휴식공간 제공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산집법 제45조에 의하여 안전관리, 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입주기업체에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음

가)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입주업체 기업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위험시설 등을 저장하거나, 사용·설치할 때에는 관계법령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광양시 관내 파출소, 소방서 등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계 구축

나)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특정대기유해물질 기준을 정하여 입주제한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발생 사업장의 입주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제시
- 산업시설 계획으로 인하여 주변지역에 유발되는 대기오염을 최소화토록 각자의 배출허용기준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토록 할 것임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입주시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득하도록 할 계획임
- 배출 유해물질은 법 제8조 또는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하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다른 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할 것임
- 다량의 휘발성유기화합물이 발생하는 도장공정이 있는 업체의 입주 제한과 작업장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장소는 밀폐화(Clean Room)하는 등의 저감방안을 수립하여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것임

다)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단지 내 사업주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향상시켜 산업재해 발생감소에 대한 꾸준한 지도노력 필요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산단 내 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산업재해예방에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보건조치를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조치를 하여야 함.

4) 기반시설지원

- 산업단지내 도로,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III 관계도서 열람

- 관련도서는 전라남도 지역경제과(☎061-286-3852) 및 광양시 투자유치과(☎061-797-3455)에 비치하고 일반인 열람이 가능합니다.

전라남도 고시 제2015-318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인가 고시

하수도법 제1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설치(변경) 인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 공공하수도 설치내역

시 설 명	전남 영광 사등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사업시행자	영광군수				
사업목적	생활하수의 적정처리로 수질을 보전하고, 주민 주거환경과 공중 보건 향상				
위 치	전남 영광군 백수읍 중앙로 203				
처리용량 (하수관계)	55톤/일				
처리공법	DEHASS공법				
처리구역면적	0.204km ² (당초 0.147km ² → 변경 0.204km ²)				
사업시행기간	‘15. 10. ~ ’ 16. 10.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토지 소재지(지번)	지목	소유자	지적(m ²)	편입면적(m ²)
	해	당	없	음	

※ 관계 도서 열람 장소 : 영광군 상하수도과(061-350-5287)

전라남도 공고 제2015-873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 양수인가 내용

구 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 양 광 발전사업 (전남제3939호)	업 체 명		(주)서영
	발전소명	진주태양광발전소	서영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김 종 석	장 동 우
	소 재 지	광주광역시 광산구 왕버들로132번길 22, 203동 1304호(수원동, 수원2차우미린아파트)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그린테크로 13
	설치장소	순천시 외서면 반용리 288외 11 (288-1, 288-2, 289, 290, 291-1, 291-2, 291-3, 산30, 산31-1, 산32, 산49-2)	
	설비용량	999kW	
	허가일자	2014년 10월 31일	
	양 수 예 정 일	2015년 10월 (양도양수 계약 : ' 15.10.)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0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등록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업 종 (등록번호)	상 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건축공사업 (제150779호)	(주)신흥종합건설 (노유자)	전남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470 2층	2015. 10. 23.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1호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등록 등의 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공고) 규정에 의거 신규 등록한 정보통신공사업체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등록 현황

등록업종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등록일자	비고
정보통신공사업 (제610230호)	(주)정우엔지니어링	김재일	전남 담양군 월산면 담장로 439	2015.10.15.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4호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1. 규 칙 명 :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2. 제정이유
 - 국민안전처의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위 처에서 지시한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표준안’ 대로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을 전부 개정
 - 이를 통해 항공구조구급대의 운영 강화와 항공기 안전관리에 기여
3. 주요내용
 - 제명 「전라남도항공대 운영규칙」을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으로 개정함(안 제2조)
 - 긴급운항 발생시 운항통제관 또는 상황근무책임자(상황실장)의 지시에 의하여 운항할 수 있던 것을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 지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8조, 제9조)
 - 비행 전·중·후 조치사항을 직책별 구분하여 각자 임무를 구체적으로 지정함(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 항공대원 탑승기준을 명시하여 불필요한 인원 탑승 방지(안 제17조)
 - 조종사 비행시간 제한 및 비행 후 휴식시간 기준 추가(안 제21조)
 - 비상시 긴급조치 후 보고 한계 변경 및 절차 구체화(안 제22조)
 - 보고자 변경 : 항공대장 → 통제관
 - 긴급조치자 용어 변경 : 조종사 → 기장
 - 운항실적 및 구조구급활동 상황을 연 2회 장관에게 보고(안 제23조)
 - 항공대원의 지상 안전 준수사항 일부 변경 및 추가(안 제25조)
 - 항공기로부터 이격거리 15미터 추가
 - 유류고 이격거리 추가 및 유조차로부터 이격거리 변경 : 6미터 → 30미터
 - 항공대장에 의한 항행안전시설 점검결과 기록·유지

- 항공대원의 주류 금지 및 측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안 제29조)
- 항공안전 의무보고, 항공안전 자율보고, 안전계획 수립, 정비계획 신설(안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교육훈련을 직책별, 임무별 구분 및 세분화하고 계획수립, 교육훈련 실시, 평가 및 조치 등 절차 신설(안 제5장)
- 항공기사고 시 필요한 경우에만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조사 의뢰 하도록 한 것을 통보하도록 변경함(제53조제4항)
- 항공기 일일점검표(별지 제14호), 정비이월기록부(별지 제20호), 저장 탱크 및 급유장치 점검표(별지 제21호) 등 서식이 추가됨

4.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다음

5.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구조구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우 526-823/ 전남 영암군 덕진면 소방항공대길 99 전남소방항공대 운항실
(전화 : 061-286-0923, FAX : 061-286-0940)
전자우편 : shc4507@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5조에 따라 전라남도 항공구조구급대의 편성·운영, 항공기의 운항, 항공안전관리, 정비 및 품질관리, 교육훈련,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구조구급대” (이하 “항공대” 라 한다)란 항공대원, 항공기, 유조차량, 격납고 및 부대시설 등으로 구성된 것을 말한다.
2. “항공대장” 이란 항공대의 항공대원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3. “항공대원” 이란 항공대에 소속된 조종사, 정비사, 구조대원·구급대원(이하 “구조구급대원” 이라 한다), 유조차량 운전요원 및 항공대에 지원된 인력을 말한다.
4. “기장” 이란 항공기의 비행 중 운항과 안전을 책임지는 조종사로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5. “부조종사” 란 항공기의 비행 중 기장의 지시사항을 수행 및 보좌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6. “교관조종사” 란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한 조종교육증명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항공대장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7. “학생조종사” 란 신규임용이나 기종전환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교관조종사로부터 비행교육 및 훈련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8. “탑승자” 란 항공기에 탑승하는 항공대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9. “주간비행” 이란 해가 뜬 때부터 질 때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0. “야간비행” 이란 해가 질 때부터 다음날 해가 뜨기 전까지의 시간에 실시하는 비행을 말한다.
11. “계기비행” 이란 항공기의 자세·고도·위치 및 비행방향의 측정을 항공기에 장착된 계기에만 의존하여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2. “시계비행” 이란 기상상태가 양호한 상태에서 계기비행방식으로 하지 않고, 조종사의 시각으로 비행하는 것을 말한다.
13. “기종전환교육” 이란 조종사가 새로운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해당 기종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14. “기술유지비행” 이란 조종사가 비행기술을 유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비행을 말한다.
15. “곡예비행”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을 말한다.

- 가. 항공기를 뒤집어서 하는 비행
 나. 항공기를 옆으로 세우거나 회전시키며 하는 비행
 다. 항공기를 급강하시키거나 급상승시키는 비행
 라. 항공기를 나선형으로 강하시키거나 실속(失速)시켜 하는 비행
 마. 그 밖에 항공기의 비행자세, 고도 또는 속도를 비정상적으로 변화시켜 하는 비행
16. “시험비행”이란 항공기의 성능을 점검하기 위한 비행을 말한다.
17. “관계기관”이란 항공기운항과 관계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18. “관제기관”이란 항공기의 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항공기의 항행을 통제하는 기관으로서 항공교통센터(ATC : Air Traffic Center)와 군중양방공관제소(MCRC : Master Control and Reporting Center)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19. “항공고시보(NOTAM : Notice to Airmen)”란 항공정보를 포함한 운항안전과 능률에 영향을 미치는 항법시설·항공관제절차 및 시설의 설치와 변경에 관한 정보를 조종사에게 제공하는 문서를 말한다.
20. “항공고정통신망(AFTN : Aeronautical Fixed Telecommunications Network)”이란 항행의 안전과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항공업무 수행을 위한 항공기지국 사이의 전문 및 디지털 자료교환을 위하여 제공되는 항공고정회선들의 전 세계적인 통신망을 말한다.
21. “운고(ceiling)”란 하늘이 구름으로 8분의 5 이상 덮인 경우에 지상 또는 해상으로부터 가장 낮은 구름까지의 높이를 말한다.
22. “시정(visibility)”이란 기상조건에 따라 결정하는 거리로서 주간에는 눈으로 무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하고, 야간에는 조명 표적을 식별할 수 있는 수평거리를 말한다.
23. “비행금지구역”이란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으로서 국가의 안녕질서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된 공중구역을 말한다.
24. “등록”이란 항공기를 신규 도입할 경우 항공법에 따른 등록기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25. “기관부호”란 국민안전처 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를 표시하기 위하여 항공기에 부착하는 기호로서 기관명칭과 기관부호로 구분한다.
- 가. 기관명칭 : 각 기관의 소속을 나타내기 위한 명칭
 나. 기관부호 : 각 기관별 명칭과 3자리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
26. “등록부호”란 항공기 등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국적기호와 4개의 아라비아 숫자로 이루어진 부호를 말한다.
27. “예방착륙”이란 비행 중 조종사가 예기치 않았던 항공기의 결함이나 악천후 등으로 계속 비행할 경우 이상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공기를 지상에 착륙

시킨 상태를 말한다.

28. “비상착륙”이란 비행 중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또는 그 외의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더 이상 비행이 불가능하여 긴급히 항공기를 착륙시킨 상태를 말한다.

29.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항공기에 비행을 목적으로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의 사망·중상 또는 행방불명

나. 항공기의 중대한 손상·파손 또는 구조상의 결함

다.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30. “항공기준사고”란 항공기사고 외에 항공기사고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 관련 별표 5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1.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 외에 항공기 운항 또는 항행 안전시설과 관련하여 항공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법 시행규칙」 제8조의2 관련 별표 6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항공대의 운영,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무분장) ① 항공대의 업무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항공대장을 둔다.

② 항공대의 업무 전문성을 위하여 운항실, 정비실 및 대응실을 둔다.

③ 항공대장은 별표 1에 따라 운항실, 정비실 및 대응실에 업무를 분장하여 운영한다.

④ 항공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업무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출동구역에의 숙지비행훈련

3.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항공훈련

4. 시험비행 및 구조구급훈련

5. 다른 법령에 근거한 항공지원

⑤ 항공대는 도정업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임무를 수행한다.

1. 투자유치 및 관광사업 등을 위한 공중 현지답사

2. 항공촬영 및 공중시찰

3. 귀빈공수

4. 전라남도 및 시·군의 각종 행사지원

5. 기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⑥ 항공대 임무수행의 우선순위는 제4항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운항관리

제5조(항공기의 등록) 항공기를 신규로 구입하였을 때에는 「항공법」 제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항공기 등록부호 표시 등) 항공기를 등록한 후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여한 항공기 등록부호를 부착하되 「소방항공기 등록부호 등 표시규정」을 따른다.

제7조(운항절차) 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소방본부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통제관은 소방본부 소관 실·과장이 되며 항공대에 대한 행정적 지휘·감독을 한다.

③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항공기는 통제관이 발행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행지시서에 따라 운항하여야 한다.

⑤ 항공대장은 제4항에 따른 항공기의 운항이 끝났을 때에는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기능검사를 위한 시험비행과 기술유지비행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운항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대장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다.

⑦ 항공대장은 항공근무일지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유 항공기별로 인원을 편성하고, 항공기상 및 항공고시보(NOTAM)를 상시 파악하여 긴급운항에 대비하여야 한다.

⑧ 항공대장은 항공기 가동 상황과 이륙 기상조건을 정기(근무교대시, 낮 12시, 해지는 시간, 밤 12시) 및 수시로 119종합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출동지령을 받은 후 비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긴급운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출동지령에 따라 긴급 운항한다. 이 경우 상황실 근무책임자는 출동지령 후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인명구조 및 응급환자의 이송
2. 화재 진압
3. 장기이식환자 및 장기의 이송
4. 항공 수색 및 구조 활동
5. 공중 소방 지휘통제 및 소방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의 운반
6. 그 밖에 긴급 상황 발생에 따른 운항
7. 다른 상황실로부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에 해당하는 긴급운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긴급 운항의 경우에는 제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출동지령시스템 또는 구두지시에 따라 비행할 수 있다.

제9조(항공기의 지원요청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항공기 운항을 중앙119구조단 또는 다른 시·도 항공대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지원받으려는 해당 항공대의 통제관에게 사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앙119구조단 또는 다른 시·도 항공대로부터 지원요청을 받은 통제관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운항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다른 지휘센터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항공기 지원 요청서에 따라 긴급운항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지휘센터의 근무책임자는 지원요청을 받은 항공대의 통제관에게 항공기 지원요청서를 사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긴급운항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실은 이륙 또는 착륙장소 선정 및 안전조치, 구조구급대의 출동조치, 이송병원의 선정 등 필요한 조치와 정보를 상대방 상황실과 출동할 항공대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4조제5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항공기를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소방본부장과 협의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조제5항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의해 관내 시·군에서 항공기 운항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무와 관련된 도 본청 실·국에서 운항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항공기의 운항신청 시기는 항공기 및 선택장비의 준비와 관계기관과 협조·비행인가 등 원활한 항공지원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에 요청하여야 한다.

1. 긴급구조 및 화재출동 : 최단시간 내
2. 긴급행사 및 귀빈탑승 : 24시간 전
3. 일반 행정 지원 : 48시간 전
4. 각종훈련 및 행사지원 : 1주일 전
5. 연간 사업계획 업무 : 1개월 전

⑧ 항공기 탑승자는 운항 2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도착하여야 하며, 항공기 탑재를 요하는 물품은 30분전까지 지정장소에 대기시켜 놓아야 한다.

제10조(비행제한 등) ① 항공기는 기상조건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비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주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풍속이 초속 15미터(약 30노트) 이상일 때
 - 나. 수평시정이 1,500미터 이하일 때
 - 다. 운고가 150미터(약 500피트) 이하일 때
2. 야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가. 풍속이 초속 10미터(약 20노트) 이상일 때
 - 나. 수평시정이 5,000미터 이하일 때
 - 다. 운고가 500미터(약 1,500피트) 이하일 때
3. 지상 및 공중시정이 항로 또는 목적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 이하로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

4. 각종 기상특보(태풍, 강풍, 강설, 강우, 안개 등 시야가 잘 안 보이는 상황, 요란 기류)가 해당 지역 안에 발령되었을 때

② 비행경로에 뇌우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비행경로를 변경하여 운항하여야 한다.

③ 비행 중 뇌우와 우연히 만났을 경우 뇌우지역이 광범위하여 적절한 회피 운항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종사가 최적 착륙지를 선정하여 착륙하고 기상상태가 호전될 때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④ 착빙(着氷)이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비행은 피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이륙 전 주회전익(主回傳翼) 및 동체에 착빙이 있을 경우에는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⑤ 시정장애가 있는 지역의 비행은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노선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심한 요란기류 안에서는 탑재 객체의 내용에 따라 조종사가 비행의 중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한다.

제11조(특수한 조건에서의 운항) ① 야간에 항공기를 운항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항구간의 기상상태가 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

2. 항공기의 각종 계기 및 통신장비가 정상적일 것

3. 야간 이륙 또는 착륙을 위한 등화 및 조명 시설이 구비될 것

② 야간비행은 기상 등을 판단하여 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조명 등 안전장치를 구비한 경우에는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다

③ 계기비행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계기비행자격을 갖추고 충분한 계기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게 하여야 한다.

2. 비행개시 60분 전까지 관제기관에 계기비행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는 시계비행 중에 예기치 않은 악기상(惡氣象)과 우연히 만난 경우에는 해당 관제기관에 무선으로 계기비행 승인을 받은 후 목적지까지 비행할 수 있다.

④ 한국전술지대를 비행하고자 할 때에는 유엔사령부·연합사령부·주한미군사령부의 한국전술지대 및 완충지대 비행절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비행계획서) ① 비행을 지시받은 조종사는 비행 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분석하여 비행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관제소에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비행 중에 무선, 전화 등의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기상조건

2. 주항로·예비항로

3. 연료소모 판단

4. 비행장 상태 및 모든 규정 숙지

5. 그 밖에 비행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비행계획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사용하고, 항공고정통신망(AFTN) 또는 항공정보시스템(UBIKAIS)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식을 사용한다.

제13조(기상자료) ① 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기상 실황 및 예보·특보 등은 기상관서에 서 제공하는 가장 새로운 자료를 적용한다.

② 기상 실황 및 예보·특보 등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른다.

제14조(비행 전 조치사항) 항공대원은 비행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비행임무 숙지, 운항임무를 고려한 이륙 또는 착륙 시의 중량 확인

나. 항공기와 장비품의 상태 확인·점검

다. 항공고시보 및 기상정보 파악, 관제기관에 비행계획서 제출

라. 해당 관제기관 및 지휘센터에 비행 예정사항 통보

마. 연료 적재량 확인, 탑재용 항공기 일지 정비기록 확인

바. 탑승자 안전 확인 및 교육

사. 착륙장 확보

2. 정비사

가. 항공기 정비 및 검사 기록 확인

나. 항공기 안에 비행관련 서류 및 각종 비행기록서류의 보관

다. 항공기 정비 장비 및 부수 기자재 확인

라. 항공기 안전비행을 위한 외부 안전조치

3. 구조구급대원

가. 임무에 적합한 구조·구급 장비 확인 및 적재

나. 구조 또는 구급활동에 필요한 관련일지 작성 준비 및 관리 유지

제15조(비행 중 조치사항) ① 항공대원은 비행 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항공기 운용기준에서 정한 기술조작

나. 관제기관 및 비행장의 관제절차 준수

다. 항공고시보 및 비행통제구역의 숙지·이행

라. 기상상태의 변화에 따른 주의 및 적절한 처리

마. 비행 중 사방의 돌레 경계

바. 각종 계기의 정상범위 확인 및 점검

사. 계획된 항로를 부득이 이탈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관제기관에 사전 통보

2. 정비사

- 가. 항공기 상태 확인 및 조언
- 나. 임무수행 중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3. 구조구급대원

- 가. 임무수행 중 기내 안전 확인 및 필요한 조치
- 나. 환자 응급조치 및 상태변화 등 특이사항 기록
- 다. 공중경계 및 기상상황 등 운항관련 특이사항 조언

② 조종사는 비행 중 적절한 임무수행 및 항공기 탑승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충돌방지를 위하여 다른 항공기 또는 물체로부터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저고도로 비행하거나 물건을 투하·살포 시에는 지상 안전에 최대한 유의하여야 한다.
2. 이륙 또는 착륙 및 비행 중에는 상황실 및 관제기관과 무선교신을 유지하고 상황실 및 관제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관제기관이 없는 곳이라도 이륙 또는 착륙을 할 때에는 경계송신을 하여야 한다.
3. 항공기의 이륙 또는 착륙은 헬기착륙장(헬리포트 및 헬리패드)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게 다른 장소를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장소를 이용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갑작스런 고장 등 이상 현상의 발생으로 부득이한 응급조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곡예비행이나 난폭한 비행을 해서는 아니 된다.
5. 항공기의 피·아 식별장치 또는 통신기기 작동불량으로 송수신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항공기를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제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운항할 수 있다.
6. 비행 중 항공기에 이상 현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비상착륙 또는 예방착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비행조건이 위험하여 탑승자 및 항공기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조종사의 판단에 따라 당초의 비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상황실, 통제관 및 해당 관제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8. 항공기가 불시착한 경우에는 인근 소방관서 및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현장보전을 위한 경비 및 보안 협조를 요청하고, 지체 없이 상황실 및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비행 후 조치사항) 항공대원은 비행이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종사

가. 지휘센터 및 해당 관제기관에 착륙 통보

나. 통제관에게 운항결과 및 이상 유무 보고

다. 비행 중 발생한 결함내용과 비행자료를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에게 통보

라. 일일 비행전, 비행간, 비행 후 검사를 실시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유지

2. 정비사

가. 탑재용 항공일지 정비기록부분의 작성

나. 조종사로부터 통보받은 사항의 확인·조치

다. 비행 후 점검 절차에 따른 점검

라. 일일 비행전, 비행간, 비행 후 검사를 실시하고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유지

3. 구조구급대원

가. 구조구급일지 작성

나. 탑재되었던 구조구급장비의 확인·점검

제17조(항공대원의 탑승기준) ① 항공기별 탑승인원은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 구조구급대원 1명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과 기종별 교범의 운용한계 안에서 항공기 및 운항목적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인명구조, 응급환자 및 장기이식환자 이송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응급구조사 1명 이상(의사 또는 간호사가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이 탑승하여야 한다.

② 조종사 비행훈련, 산불진화 등 구조구급대원의 탑승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구조구급대원을 탑승시키지 않을 수 있다.

제18조(통신) ① 항공기의 무선시설을 이용·취급하는 사람은 목적 외 교신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조종사는 비행 중 항상 상황실과 무선통신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출발 직전과 목적지 도착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인명구조 등의 경과를 상황실에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다른 시·도 지역에서의 임무수행을 할 때에는 해당지역 소방본부 및 소방서와 필요시 무선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9조(연료탑재 기준) 항공기의 연료 탑재량은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연료량 외에 최소 20분 이상 비행할 수 있는 양을 추가로 탑재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비행시간 기록)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비행시간기록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종사별 작성방법에 따라 기록하여야 한다.

1. 기장의 비행시간은 기장으로 지명 받아 조종 또는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동일 항공기 비행을 2명 이상이 기장의 비행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2. 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기장을 보좌하여 조종 또는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3. 교관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학생조종사의 교육 또는 평가를 위한 비행임무를 수행

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하며, 동일 항공기 비행을 2명 이상이 교관 조종사 시간으로 기록할 수 없다.

4. 학생조종사의 비행시간은 해당 기종의 조종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비행하였을 때의 시간을 기록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조종사 비행경력증명의 요청을 받은 경우 제1항의 개인비행시간기록표를 참고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비행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제21조(비행시간 제한) ① 조종사의 비행시간은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야간에는 1일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긴급운항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하며 비행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미리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의 비행 후 휴식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긴급운항으로 비행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상황이 끝난 후 휴식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간비행 후 휴식시간

- 가. 1일 5시간 이내 비행 : 8시간 이상
- 나. 1일 8시간 이내 비행 : 12시간 이상
- 다. 1일 8시간 초과 비행 : 24시간 이상
- 라. 연속 7일간 비행 : 24시간 동안 모든 근무 면제

2. 야간비행 후 휴식시간 : 주간 비행의 1.5배로 산정하여 적용

제22조(비상시 조치사항) ① 항공기가 지상 또는 공중에서 화재, 기체결함, 인적요소, 보안관계 등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행교범, 정비교범에 따른 기술조작과 긴급조치를 한 후 통제관에게 보고한다.

② 비행 중 비상착륙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사항을 따른다.

1. 기장은 비행교범에 따라 기술조작을 실시한다.
2. 비상착륙지점은 도달 가능한 범위 안에서 가장 적절한 지점으로 선정한다.
3. 비상착륙 후 기체로부터의 탈출은 출입구에서 가까운 사람부터 순서 있게 행하고 탑승객, 항공대원 순서로 탈출하도록 한다.
4. 비상착륙 후 고장이 제거되어 비행이 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통제관의 승인을 받기 전에는 이륙해서는 아니 된다.

③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 기장은 다음 각 호의 상황에 따라 조치한다.

1. 이륙 중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 착륙지점을 선정, 접근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실시하고 화재에 대응 한다.
2. 비행 중 항공기 화재가 발생한 경우 :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비상강하를 시작하면서 비행교범에 따른 기술조작을 실시하고 화재에 대응한다.

④ 비행 중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고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비상조치를 한 후 관계기관에 그 내용을 보고한다.
2. 공중에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통신이 되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

는 지상 착륙 후 관계기관에 보고한다.

3. 비상착륙 또는 사고발생과 관련한 시간, 장소, 탑승객 및 항공대원의 상황, 기체의 상황, 원인 등을 통제관에게 신속하게 보고한다.

⑤ 사고가 발생할 경우 항공대원의 책임 및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명구조에 최대한 노력한다.
2. 항공기에 적재된 연료로 인하여 발생할 위험 방지에 노력한다.
3. 구조구급상황 발생 시 인근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한다.

제23조(운항기록유지)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실적을 별지 제7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운항실장은 운항항공기, 조종사자격, 임무종류, 운항구간 및 운항시간 등 각 요소별로 연·월·일의 정확한 운항기록을 항상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운항 상황을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조구급대원은 시행규칙 제17조와 제18조에 따라 구조활동일지, 구급활동일지를 성별로 구분하여 기록·유지하고 국민안전처의 구조구급활동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하며, 소방본부장은 항공구조구급 활동상황을 연 2회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제24조(일일안전점검) ① 운항실장은 근무교대를 할 때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일일 안전점검을 종합적으로 실시하여 항공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일일건강상태를 별지 제9호서식의 항공대원 일일 건강 점검표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며, 항공대원은 자신의 건강상태가 항공기 조종이나 임무수행에 있어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에 탑승해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지상 안전) ① 항공대원은 지상에서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기로부터 15미터 이내에서 흡연금지
2. 격납고 내 흡연금지 및 소화기 보관
3. 유류고 및 유조차로부터 30미터 이내 흡연금지
4. 항공기 시동 시 소화기 준비
5. 항공기 이륙 또는 착륙 시 항공기 주변에 항공기 날개, 엔진 흡입기의 파손 우려가 있는 모든 장애물 제거

② 항공기 유도요원은 항공기를 지상에서 유도할 때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

1. 항공기는 정면 진행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유도요원은 항공기가 착륙하는 장소에 장애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3. 유도는 수신호로 할 것. 다만, 필요하면 무선통신으로 할 수 있다.
4. 항공기의 정면 우측에 위치하여 유도할 것
- ③ 항공대장은 항행안전시설 점검결과를 별지 제10호서식의 항공안전시설 점검표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기내 안전) ① 항공대원은 기내에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 안에서 흡연금지
2. 좌석벨트의 착용

다만, 기내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또는 장비조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의 비상장비 및 안전장비 구비

- 가. 구급의료용품
- 나. 불꽃조난신호장비
- 다. 소화기
- 라. 비상등
- 마. 구명조끼

- ② 제1항제3호 마목은 해상비행, 내수면에서의 인명구조활동, 산불진압을 위한 담수활동과 담수훈련을 할 경우에 착용한다.

제27조(검사·정비 안전) 정비사는 항공기의 검사 및 정비 중 항공기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정비 시작 및 검사 전에 준비사항 구비 등 주위의 안전상태 확인
2. 제작사의 정비교범에 따른 정비방법 및 절차 준수
3. 승인된 부속부품 및 공구 사용
4. 시간대별 정비내용의 정확한 기록유지
5. 항공기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개인소지품 수거보관
6. 정비와 관련 없는 외부인의 접근금지
7. 그 밖에 정밀점검 및 안전에 필요한 조치

제28조(급유 안전) 항공기에 항공유를 급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유조차는 항공기로부터 6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유조차가 움직이지 않도록 바퀴 등에 고임목을 설치할 것
2. 유조차 및 항공기로부터 지상에 접지선을 설치(3선 접지)할 것
3. 급유작업 중에는 소화기를 근접 배치시킬 것
4. 급유 전에는 작업자의 정전기 방전을 위하여 접지선을 잡을 것
5. 항공기의 시동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급유할 때에는 급유 중 불꽃현상(스파크)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항공기 등화장치를 소등하고, 무전기 사용을 금할 것
6. 격납고 안에서 연료보급 및 방출을 금지할 것. 다만, 정비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에는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할 것

7. 그 밖에 화재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마련한 후 급유작업을 할 것

제29조(주류의 금지 등) ① 항공대원은 「항공법」 제47조에서 정한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구조·구급업무(이하 “항공업무 등”이라 한다)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는 항공업무 등에 종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항공대원은 항공업무 등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항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항공대원은 이러한 측정을 받아야 한다.

제30조(위험물 수송에 관한 조치) ① 위험물을 수송할 때는 통제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조종사는 해당 비행고도·기상 등을 고려하여 위험물의 수송이 비행 및 안전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는 그 위험물을 탑재해서는 아니 된다.

제31조(항공안전 의무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또는 항공안전장애(이하 “항공기사고 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거나 항공기사고등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대원은 별지 제11호서식의 항공안전 의무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한다.

③ 소방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 받은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항공안전 자율보고) ①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 외에 항공안전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지한 항공대원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항공안전 자율보고서에 따라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통제관은 항공안전 자율보고를 한 사람의 의사와 다르게 신분을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받은 내용을 분석하여 개선 및 사례를 전파한다.

제33조(안전계획 수립 등) ① 항공대장은 매년 12월말까지 월별 일정을 포함하여 다음해의 연간 항공안전활동계획을 수립하고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항공안전활동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안전교육, 위험예지훈련
2. 항공기 비행안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지상안전에 관한 사항
4. 항공기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5. 화재진압장비, 구조·구급 장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6. 계절별 안전관리 중점 사항
7. 사고사례 분석 및 전파

8. 그 밖에 항공안전에 필요한 사항

③ 항공대장은 항공대원의 안전의식 확산을 위하여 안전의 날 행사를 매월 첫째 목요일에 실시한다.

제4장 정비 및 물품관리

제34조(정비계획)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검사 및 정비를 위한 다음 해의 연간기본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수립하여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연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월별 예상 운항 시간
2. 항공기 정기검사(감항검사를 포함한다) 예상시기
3. 시간교환부품 및 재생정비사항
4. 항공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의 조달
5.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입고할 때 검토되어야 할 사항

제35조(검사의 구분) ① 항공기의 검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항공기 제작사의 정비교범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 일일검사 : 비행 당일 근무교대 후 최초비행 전·비행 간·최종비행 후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정비교범에 따른 일정한 검사주기에 이를 때 실시하는 검사
3. 감항검사 : 항공기가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성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술기준에 따른 검사
4. 특별검사 :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제외한 검사로서 항공기의 운항·관리 중 발생한 결함, 제작사 기술회보에 의해 실시하는 검사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 자체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하고 탑재용 항공기 일지 등에 기록·유지한다. 다만, 일일검사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일일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항공기 일일점검표를 준용하되 정비교범의 검사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보유 기종의 정비교범에 별도 서식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정기검사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항공대장에게 보고하고 검사주기일에 이르기 전이라도 실시할 수 있다.

⑤ 정비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정비 업무를 수행할 때 정비자와 검사자로 구분하고, 정비작업 및 검사를 상호 교차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⑥ 소방재난본부장은 감항검사를 완료하면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외주계약검사)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항공대의 자체 검사능력을 초과하는 사항 등은 외부 정비업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항공대장은 제1항에 따른 외주계약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헬기 정비에 필요한 시간
2. 헬기 검사주기(감항검사를 포함한다)의 예상 시기
3. 검사주기별 교환부품 및 정비사항
4. 외주계약검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

③ 외주계약정비를 실시할 때는 정비용역업체와 협의하여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작업의뢰서를 해당 정비용역업체에 제출한 후 지정된 날짜에 입고한다.

④ 외주계약정비를 위하여 항공기를 입고할 때에는 항공대장은 책임정비사를 지정하고, 책임정비사가 현지에 출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수행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항공기 외주계약정비 입회감독일지 및 별지 제17호서식의 외주계약정비 검사조서에 따라 수시보고 및 종합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항공기 공장입고검사
2. 항공기 세부정비계획 협의
3. 항공기정비 중간검사
4. 항공기정비 출고검사
5. 시험비행의 실시

제37조(시험비행 등) ① 제35조와 제36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가 끝난 후에 비행을 통한 기능 점검 및 시험, 항공기의 정상상태 여부 확인이 요구될 경우에는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을 실시하되 기종별 교범의 시험비행점검표에 따라 수행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상 시운전 및 시험비행은 해당 검사 및 정비에 관련된 조종사에게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비행을 위하여 항공기가 계류장의 범위를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운항한다.

제38조(항공기의 결함 처리) ① 항공기에 결함이 발생된 경우에는 조종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에 기록하고, 정비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결함(발생·해소) 보고서 및 별지 제20호서식의 정비이월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의 결함 해소작업이 완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조종사 및 정비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확인 서명을 할 것
2. 정비사는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통제관에게 반기별로 결함분석보고를 할 것

③ 항공기의 중대한 결함은 신속히 통제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경미한 결함은 해소조치 전 또는 후에 보고한다.

제39조(기술정보의 처리) ① 감항성개선지시(AD), 기술회보(SB), 기술서신(SL) 등 각종 기술지시문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보유 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에는 작업방법 등을 결정하여 정비검사서에 따라 수행한다.

② 반복되는 감항성개선지시는 반복주기, 다음 수행일자 등을 감안하여 정기검사와 병행하여 수행할 수 있다.

③ 감항성개선지시의 수행을 위한 시한이 충분하거나 별도로 시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비품 및 수행여건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조종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운항실로 통보하여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항성개선지시 수행방법을 대체할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로 시한 안에 기술지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공기 및 장비품 제작회사의 권고 또는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항공기의 감항성 및 안전성 유지에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대체하거나 수행시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대체방법이나 시한의 연기를 인가받아야 한다.

제40조(정비관련 문서 관리 등) ① 항공기 주요 구성품, 시한성 품목 및 시한성 재생품은 기체이력부나 엔진이력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항공기에 장착된 각종 선택 장비는 작업지시서, 도면, 회로도, 그 밖의 작업에 관련된 문서는 해당 항공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술지시문서 등은 이행 여부를 기종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현황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④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항공법」 제41조와 「항공법 시행규칙」 제124조에 따라 요구된 항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비행 전·후 점검을 정비사가 확인한 후 조종사가 최종 확인하여 반드시 본인이 기록하고 날인해야 하며 모든 결함수정 내용을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⑤ 모든 정비문서 기록을 수정할 때에는 한 줄로 긋고 그 위에 수정 내용을 기록한 후 수정사유와 수정한 사람의 성명을 적어야 하며, 문서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기하고 원본을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주요정비기록문서는 해당 항공기가 용도 폐기되거나 말소될 때까지 보존하여야 한다.

1. 감항성 개선지시 및 기술지시 수행기록 문서
2. 탑재용 항공일지
3.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4. 수리·개조 및 재생정비(오버홀) 기록문서
5. 장비품 이력부

제41조(항공기부품 등의 관리) ① 정비실장은 항공기의 원활한 정비관리를 위하여 다음 해에 필요한 항공기 부품 및 장비품(이하 “부품 등”이라 한다)의 수요조사를 매년 7월말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수요조사 결과를 다음 해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매한 부품 등을 수령할 때는 입고 전에 감항성 기준에 적합한 부품 등인지 수령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하는 부품 등은 구매처로 반송 조치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③ 부품 등은 품질보증서 및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고, 저장시한이 있는 부품(교환부품을 포함한다) 등은 간단한 이력부와 교환 사유 등을 기록한 기록부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보유 중인 부품 등의 사용은 선입·선출을 원칙으로 하며 항공관련 자재는 사용가능, 사용불가, 수리품을 구분하여 보관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를 부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⑤ 부품 등의 취득, 사용, 폐기 등 출납 및 관리는 전산 입력하여 항상 재고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재고현황을 매년 7월말까지 실제 조사하여야 한다.

⑥ 항공기의 시한성 품목의 교체주기 산정기준은 기체시간(항공기체의 비행시간) 또는 일력(품목 제작일로부터 기산한 날)으로 한다. 다만, 보유기종별로 다른 경우 정비교범 기준에 따른다.

제42조(부대장비 등의 관리) 정밀측정 장비는 유효기간 안에 검정·교정을 실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부대장비는 제작사 정비교범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항공유 품질관리) 항공유는 저장부터 항공기에 급유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수령하여 저장 시 품질검사 합격증을 확인할 것
2. 수령 시 견본을 채취하여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3. 제2호에 따른 검사 후 필요한 경우 견본을 채취하여 시험기관에 시험의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할 것
4. 항공유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저장탱크 및 급유장치 점검표에 따라 점검할 것
5. 급유 전에 유조차의 탈수상태 점검 및 육안검사를 실시할 것

제5장 교육훈련

제44조(항공대원 교육훈련) ① 소방본부장은 항공구조구급대의 비행, 정비, 구조구급 분야별 기술유지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항공대원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소방본부장은 보유 항공기에 대한 비행기량(기종전환교육, 야간·계기비행을 포함한다), 비상절차 수행, 정비기술(기종전환정비교육을 포함한다), 항공기상 상황관리, 항공안전관리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작사 또는 국내·외 교육훈련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5조(항공훈련) 조종사의 기술 유지 및 능력 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및 구조훈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유지 및 기술능력향상을 위한 비행훈련

- 가. 기본비행
- 나. 야간비행
- 다. 계기비행
- 라. 산불진압
- 마. 항공방제·방역

2. 구조훈련

- 가. 고층건물 인명구조
- 나. 산악사고 인명구조
- 다. 수난 인명구조
- 라. 항공기사고 수색구조
- 마. 환자 이송 훈련

3. 자격 회복 훈련

- 가. 기본비행
- 나. 야간비행
- 다. 계기비행

제46조(비행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비행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 하여야 하며 연간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본비행훈련 : 다른 시·도 숙지비행을 포함하여 월 2시간 이상의 주간비행으로 하고, 보유 기종별로 최종 비행일 부터 90일 이내에 3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2. 야간비행훈련 : 최종 비행일 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야간 비행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3. 계기비행훈련 : 자격보유자가 최종 비행일 부터 90일 이내에 1시간 이상의 계기 비행경험을 유지하도록 할 것. 다만, 실제 임무비행 시간 또는 모의비행장치에 의한 훈련시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4. 화재진압을 위한 담수 및 진화훈련은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 1회 이상 실시할 것. 다만, 산불대책기간 시작 전 실제 임무수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다.
5. 항공방제훈련은 항공방제 임무가 있을 때 실시하며 최초 실시일 전까지 훈련을 마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구조훈련은 구조훈련 종류별로 실제 임무비행을 포함하여 연간 지속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7. 기본비행, 야간비행 또는 계기비행 경험을 충족하지 못한 조종사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3시간 이상의 자격회복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신입조종사는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유 기종별로 20시간 이상의 기종전환비행과 5시간 이상의 인명구조훈련 및 화재진압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입조종사의 교육훈련평가는 지상학 평가와 훈련비행 평가로 구분하고, 훈련비행 평가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신입조종사 교육비행 평가표에 따라 실시하며, 그 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종합평점이 “우” 등급 이상 : 합격

2. 종합평점이 “미” 등급 : 재평가

3. 종합평점이 “양” 등급 이하이거나 재평가 결과 제1호의 합격기준에 미달할 때 : 미흡한 과목은 일정시간 재교육을 실시

④ 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평가를 위한 평가관은 조종교육증명 소지자 또는 5년 이상 항공기구조구급대 근무경력이 있는 선임 조종사로 한다.

⑤ 재직조종사의 기량을 재평가하는 경우에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제47조(구조·구급 교육훈련) ① 항공대장은 연간 구조·구급 교육훈련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훈련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른 항공구조훈련

2. 건물·산악·수난사고 등의 인명구조구급훈련

3. 항공 구조·구급 장비의 조작

4. 항공안전 및 구조·구급 활동에 따른 안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항공 구조·구급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② 구조대원 또는 구급대원이 항공기구조구급대에 전입하였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교육·훈련을 받아야만 항공기구조구급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8조(정비교육) ① 항공대장은 연간 항공기 정비교육 계획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이론과 실습교육의 적절한 편성

2. 최신 항공기 정비기술의 반영

3. 전문 외부강사 초빙 또는 전문외부기관에 위탁교육

② 신입정비사의 보유 기종 정비교육은 교육일정, 교육과목의 편성, 실기강사 지정 및 평가방법 등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별지 제23호서식의 신입정비사 정비교육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제46조제3항의 기준에 준하여 조치한다.

③ 신입정비사 기종전환정비교육의 강사, 교재 및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강사 :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소지하고 교육하려는 기종의 정비업무 분야에서 5년 이상의 경험을 가진 사람
2. 교재 : 제작사에서 항공기 정비에 관련된 이론과 실기 교육을 목적으로 제작된 정비 교범 및 그 밖의 기술 도서
3. 교육내용
 - 가. 항공법규 및 항공기 정비관련 규정
 - 나. 정비 업무 수행을 위한 각종 기록문서 작성법
 - 다. 항공 안전에 관한 사항
 - 라. 보유 항공기 개요
 - 마. 보유 항공기의 각 계통 구조 및 기능
 - 바. 보유 항공기 취급 및 정비 방법
 - 사. 보유 항공기의 각종 점검 방법
 - 아. 보유 항공기 정비실무
 - 자. 그 밖에 정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 ④ 재직정비사의 기량을 재평가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장 보안관리

제49조(항공기의 보안관리) 항공대장 및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보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항공대장은 자체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할 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가 다른 비행장 안에 있을 경우 해당 비행장의 보안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2. 항공대에 계류 중인 항공기는 반드시 격납고에 정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다만, 출동대기 중인 항공기는 계류장에 정치할 수 있다.
3. 항공기를 격납고 외의 계류장에 정치할 경우에는 잠금장치를 하고 열쇠는 항공대장이나 당직 근무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4. 비행 중 불순분자에 의한 피랍이 기도될 때에는 즉시 해당 관제기관에 통보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거부하여야 한다.
5. 항공기를 경비 등 별도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없는 장소에 착륙한 경우 그 위치를 이탈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0조(경고표지) 제한구역 등에는 식별이 쉽도록 경고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1조(탑승자 준수사항) ① 탑승자의 보안에 관한 사항은 항공관련법령을 준용한다.

- ② 탑승자는 항공대원의 안전에 관련된 지시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관계없는 특수비행 등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항공대원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항 전에 탑승자 및 탑승자의 소지품 등을 검색 할 수 있다.

④ 탑승자는 무기나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통신기기 등 각종 전자제품 등을 휴대할 수 없다. 다만, 경호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사전에 통제관과 협의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탑승자가 항공기에 탑승할 때에는 반드시 항공대원의 안내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항공기의 시동 중 또는 회전 중에는 접근을 금지할 것
2. 항공기에 접근할 경우 반드시 항공기의 정면 또는 측면에서 할 것

제7장 항공기사고 조사 및 처리

제52조(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 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전라남도119항공기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 소방본부장
2. 위원
 - 가. 소방행정과장
 - 나. 방호예방과장
 - 다. 구조구급과장
 - 라. 조종사, 정비사, 항공구조구급대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마. 보험사, 제작사 관계자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 바. 그 밖의 항공전문가로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3. 간사 : 항공대장

제53조(사고시의 긴급조치) 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예정시간이 30분이 경과하여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항공기사고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항공대장은 항공기의 운항 중 고장이나 다른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마련하여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하였거나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행한다.

1.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

2.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
 3.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
 4.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 요청
- 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 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24호서식의 항공기 사고보고서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한다.

제8장 보칙

제54조(보고) 항공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소방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월간 항공운항실적과 구조·구급 활동실적
2. 제35조에 따른 검사 및 정비실적, 제41조에 따른 항공기 부품 등의 관리 현황
3.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에 따른 월간 항공대원 교육훈련 실적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업무분장(제4조제3항 관련)

구 분	업 무 분 장
운 항 실	운항실장은 항공기의 운항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비행계획 및 비행정보에 관한 사항 2. 기상정보 및 안전운항에 관한 사항 3. 조종 또는 비행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항공안전활동 계획 수립, 항공안전장애보고·비행평가-CRM (Crew Resource Management) 등의 운영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탑재용 항공기 일지, 운항실적 등 운항관련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정 비 실	정비실장은 항공기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항공기 및 항공장비의 정비(정비확인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항공무전기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항공기 정비계획 수립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장비품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항공기 연료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항공정비·탑승임무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8. 항공기 및 항공장비품의 정비관련 문서와 기록의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등
대 응 실	대응실장은 다음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 및 화재진압에 관한 사항 2. 구조구급장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조차량 관리에 관한 사항 4. 항공구조구급활동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구조구급·화재진압 활동에 관한 기록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비고 : 청사 유지관리, 일반물품 관리유지 등 상기 업무분장외의 사항은 항공대장이 따로 분장한다.

[별표 2]

전라남도항공대원 교육훈련(제44조제1항 관련)

구 분		조종사	정비사	구조구급대원
교 관		교관 조종사	선임 정비사	선임 구조구급대원
교육 훈련 내 용	직 무 별	· 기본비행술 · 야간비행술 · 비상절차, 계기비행술 · 항공용GPS운용 · 비행정보간행물 · 표준입출항절차 · 비행교범 · 항공기 탑재장비 운용	· 로터계통 · 동체계통 · 조종계통 · 착륙계통 · 동력계통 · 통신계통 · 전기계통 · HOIST계통	· 로프응용기술 · 공기호흡기운용 · 항공응급처치훈련 · 호이스트 및 레펠 하강 · 구조장비 조작 · 구급장비 조작
	공 통	· 항공인명구조훈련 · 응급환자· 장기 이송 · 화재진화훈련 · 항공탐색구조훈련	· 호이스트 운용 · 항공유 보급절차 · 항공기 취급 및 계류	· EMS장착훈련 · 심폐소생술(CPR) · 비상탈출훈련 · 항공안전관리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호 서식]

비행지시서(제7조제4항 관련)			
제 호	송 화 자 : 직	성명	
항공대장 앞	수 화 자 : 직	성명	
	통화시간 :	시	분
() 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정 제〇〇조제〇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비행을 지시함. 20 년 월 일 () 운 항 통 제 관 (인)			
① 기 종			
② 운항일시	년월일 년월일	시부터 시까지	
③ 운항구간			
④ 목 적			
⑤ 탑 승 자			
⑥ 비 고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2호 서식]

항공기 지원 요청서(제9조제1항 관련)				
요청번호제 - 호		20 . . .		
① 요 청 자	OO소방본부			
② 사용일시				
③ 사용목적				
④ 탑 승 자				
⑤ 비행지역				
⑥ 운항항공기				
⑦ 기 타 (협조기관)	재난위치		GPS 좌표	
	사고개요			
	재난분류		UHF/TRS	
	관할서(센터)		관제자/직통전화	
	구급차 대기장소		이송병원	
	기타 사항	출동구조대 연락처(휴대폰/무전기) 요구조자 연락처(휴대폰)		
기관명 : 요청관 : 전화 :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3호 서식]

항공기 운항 신청서(제9조제5항 관련)

수 신 : 운항통제관

제 목 : 소방항공기 운항신청

전라남도소방항공대운영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항공기 운항을 신청합니다.

항공기 운항 신청서	
① 신 청 자	000과장
② 사용일시	
③ 사용목적	
④ 탑 승 자	
⑤ 비행지역	
⑥ 운항항공기	
⑦ 기 타	
첨부서류	소방항공기 운항승인 공문서(도지사 결재) 사본

○ 검 토 자 : 담당, 과장, 실·국장, 도지사(행정부지사)

○ 협 조 자 : 항공대장, 소관실과장, 소방본부장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4호 서식]

FLIGHT PLAN 비행계획서(제12조제2항 관련)

PRIORITY
전문우선순위
<=> PF=>

ADDRESSEE(S)
수신처

FILING TIME
제출시간

ORIGINATOR
발신처

SPECIFIC IDENTIFICATION OF ADDRESSEE(S) AND/OR ORIGINATOR
수신처 및 발신처의 특정 식별부호

3 MESSAGE TYPE
전문종류
(F P L)

7 AIRCRAFT IDENTIFICATION
항공기 식별부호

8 FLIGHT RULES
비행규칙

TYPE OF FLIGHT
비행의 종류

9 NUMBER
몇수

TYPE OF AIR CRAFT
항공기 형식

WAKE TURBULENCE CAT.
최대이륙중량 등급

10 EQUIPMENT
탑재장비

13 DEPARTURE AERODROME
출발비행장

TIME
출발예정시간

15 CRUISING SPEED
순항속도

LEVEL
고도

ROUTE
예정비행항공로

TOTAL EET
총예상소요비행시간

16 DESTINATION AERODROME
목적비행장

HR MIN
시간 분

ALTN AERODROME
주 교체비행장

2ND. ALTN AERODROME
부 교체비행장

18 OTHER INFORMATION
기타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NOT TO BE TRANSMITTED IN FPL MESSAGE)

비행계획 전문에 포함되어 전송되지 않는 보충 정보

19 ENDURANCE
연료탑재량

EMERGENCY RADIO
비상 무선통신장비

HR MIN
시간 분

PERSONS ON BOARD
탑승인원수

UHF

VHF

ELBA

SURVIVAL EQUIPMENT/구급용구
POLAR DESERT MARITIME JUNGLE
Polaire Desert Maritime Jungle

JACKETS/구명동의
LIGHT
등화

FLUORES
형광

UHF
U

VHF
V

DINGHIES/구명보트
NUMBER
수량

CAPACITY
수용인원

COVER
덮개

COLOUR
색상

AIRCRAFT COLOUR AND MARKINGS
항공기 색상 및 문패

REMARKS
기타

PILOT-IN-COMMAND
기장

FILED BY/제출자

SPACE RESERVED FOR ADDITIONAL REQUIREMENTS

추가 필요사항용 공백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5호 서식]

[illegible]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6호 서식]

비행경력증명서(제20조제2항 관련)

1. 성명 : 2. 소속 : 3.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 . . . (-)

최종 비행 일자	항공기 형식	착륙 회수	비행임무별 비행시간							비행종류별 비행시간								기 타		
			기장	부조종사		교 관 조 종 사	학 생 조 종 사	항 공 기 관 사	소계	주간비행				야간비행					계기 비행	
				기장감독하의 조종행위	기장외 의 조종사					시계비행		야외비행		시계비행		야외비행			실 제 비 행	모 의 비 행
										기장	기장외 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 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 의 조종사	기장	기장외 의 조종사			

(중앙 및 시·도 기관명) 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 제00조제0항에 의거 위 사람의 비행경력을 위와 같이 증명합니다.

발급일: 20 . . . 발급기관명/주소 : /

발급자 : 전화번호 :

중앙 및 시·도 기관명(인)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7호 서식]

운 항 일 지(제23조제1항 관련)

운 항 계 획

0000년 0 월 0일(0)

목 적	호기	시 간	장 소	조종사	승무원	탑승자	횟수

운 항 실 적

구 분		항 공 대		000		000		000		000		000		횟수 인원
		누계	일일	누계	일일	누계	일일	누계	일일	누계	일일	누계	일일	
총 계														
긴급 및 행정 ·정비	소 계													
	인명구조													
	환자이송													
	항공순찰													
	근접배치													
	항공수색													
	산불화재													
	투자유치													
	홍보·촬영													
	도정(행정)													
	정비·시험													
	기 타													
훈련 시범	소 계													
	자체훈련													
	시범지원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9호 서식]

항공대원 일일 건강 점검표(제24조제2항 관련)

20 년 월 일 요일

결 재	항공대장

[illegible]210mm×297mm[백상지 80g/m²]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0호 서식]

항공 안전시설 점검표(제25조제3항 관련)

점검일자 20 . . .	정비사			기장			항공대장	
	정비사			기장				

구 분	관 리 내 용		상 태	비 고
헬기장	1	헬기장표식은 선명한가?		
	2	활주로표면의 균열 여부 및 위험성은 없는가?		
	3	풍향지시기 상태는 양호한가?		
	4	시설표시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5	등화시설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6	배수시설은 양호한가?		
	7	주위에 날릴만한 물건은 없는가?		
	8	주위에 신설된 장애물은 없는가?		
	9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은 통제되고 있는가?		
	10	헬기장 보안시설 및 장비작동상태는 양호한가?		
	11	접시설비는 양호한가?		
격납고	11	격납고출입문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가?		
	12	항공기격납상태는 양호한가?		
	13	격납고바닥은 청결하며, 이물질은 없는가?		
	14	유조차는 제위치에 있으며, 주위에 위험요소는 없는가?		
	15	각종장비류는 제위치에 있으며, 멈치장치는 되어 있는가?		
	16	소화전 및 소화기상태는 양호하며, 제위치에 있는가?		
	17	호이스트 작동상태는 양호하며, 제위치에 있는가?		
	18	누수되는곳은 없으며, 격납고 시설물의 상태는 양호한가?		
	19	정비실내는 청결하며, 각종 스위치는 제위치에 있는가?		
	20	공구실 및 자재실은 청결하며, 정리정돈은 잘 되어 있는가?		
	22	격납고 보안시설 및 장비작동상태는 양호한가?		
특기사항 :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1호 서식]

항공안전 의무보고서 (Aviation Safety Mandatory Report) (제31조제1항 관련) ※ 작성방법: 해당항목에 √ 하세요.						보고 구분		보고 분야 구분	
						☐ 항공기사고		☐ 항공기운항	
						☐ 항공기준사고		☐ 항공기정비	
						☐ 항공안전장애		☐ 항공교통관제	
		☐ 기타		☐ 공항항행시설					
1. 발생유형									
2. 호출부호				3. 등록기호					
4. 항공기기종(공항 · 항행시설 명칭)									
5. 발생일시(L)		년 월 일 시 분		6. 발생 장소(공항)					
7. 발생단계		☐ 지상 ☐ 이륙 ☐ 출발 ☐ 순항 ☐ 접근 ☐ 착륙							
8. 비행구간						9. 비행고도			
10. 승객수		명		11. 승무원수		운항승무원 명, 객실승무원 명			
12. 사망자				명		13. 부상자 명			
14. 기상		☐ VMC ☐ IMC							
15. 발생 개요									
「항공법」 제49조의3, 제50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4조제1항에 따라 항공기사고등을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00 운항통제관 귀하									
17. 사업자의 종류		☐ 국내 ☐ 국제 ☐ 소형 ☐ 항공기사용사업 ☐ 기타							
18. 보고자의 성명						19. 보고자의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m²]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2호 서식]

항공안전 자율보고서 (Aviation Safety Voluntary Report) (제32조제1항 관련) ※ 작성방법: 해당항목에 √ 하세요.				보고 분야 구분	
				☐ 운 항	
				☐ 관 제	
				☐ 정 비	
				☐ 객 실	
				☐ 조업 및 기타	
1. 발생유형					
2. 호출부호		3. 등록기호			
4. 항공기기종(또는 공항·항행시설 명칭)					
5. 발생일시(L)	년 월 일 시 분		6. 발생장소(공항)		
7. 발생단계	☐ 지상 ☐ 이륙 ☐ 출발 ☐ 순항 ☐ 접근 ☐ 착륙				
8. 비행구간			9. 비행고도		
10. 당시기상					
11. 승객수	명	12. 승무원수	운항승무원 명, 객실승무원 명		
13. 직책			14. 직책근무연수		
15. 소지 자격					
16. 상황기술					
「항공법」 제4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5조제2항에 따라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를 위 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00 운항통제관 귀하					
접수번호는 번입니다. 보고서 제출 증빙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7. 보고자의 주소 (제출 증빙서 발송용)					
18. 보고자의 성명				19. 보고자의 연락처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3호 서식]

정 비 검 사 서(제35조제2항 관련)

작업 지시서 번호		검 사 종 류	정기		특별		감함	
--------------	--	---------	----	--	----	--	----	--

항공기 형식	등록번호	제작사 번호	기체시간	엔 진 시 간		관 련 도 서	비 고
				NO1	NO2		

검사내용		정비 소요시간	:
------	--	---------	---

작업실시일		정 비 사					
작업완료일							
순번	검 사 사 항	결 과 사 항			검 사 일 자	확 인	
발행자		정비실장		항공대장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4호 서식]

BK117B-2 일일점검표(제35조 제3항 관련)

일자	20 . . .	정비사	PR(비행전)	TR(비행간)	PO(비행후)	조종사 기 장	PR(비행전)	TR(비행간)	PO(비행후)	항공대장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BEFORE EXTERIOR CHECK			PR	TR	PO	T/R 헤드,샤프트,벨로우 상태			GEN TRIP S/W: NORM		
LOG, Documents 탑재, 커버/타이다운 제거						T/R 피치링크 상태			DG control S/W: SLAVE		
연료탱크 드레인, 기체하부 누유 확인						블레이드 고정볼트, 발란스/다이나믹 추			FUEL VALVE S/W(2): OP and guarded		
눈, 얼음 제거(필요시), 지상취급률 제거						슬리브, 플레어링지 움직임, 벨크랑크 상태			FUEL PUMP S/W: OFF		
FUSELAGE-RIGHT SIDE			PR	TR	PO	T/R 블레이드 상태			LIGHTS-INSTR(3) & ANTI-COL, POS S/W: OFF		
조종석 공기흡입구, 하부 윈도우 상태						수직핀, 카울링, 커버 상태, 안전성			VENT FAN & STATIC HTR(2) S/W: OFF		
페달장에 유무, 동정압구, 드레인홀 오염						OGB 오일량, 누유, 필러캡, 드레인스크류			PITOT HTR(2) S/W: OFF		
조종석시트, 벨트 상태, 신호탄 탑재유무						좌측-수평, 직안정판, 위치등, 봄, D/S 페어링			ICS 불륨: 조절, Utility light: OFF		
조종석 및 객실 도어 작동상태						플릭스벨브 커버 상태			Dome light & 콜렉티브상 모든 S/W: OFF		
CABIN-TOP			PR	TR	PO	FUSELAGE-LEFT SIDE			PR	TR	PO
VHF안테나, 조종석 상부 윈도우 상태						후방엔진카울링, 방출덕트 상태			AMM SEL S/W: BAT/EXT PWR		
HYD계통 상태, 누유, 필터, 피팅 안전성						엔진실 누유, 외부이물질			SPAS S/W: OFF/RESET, EMER LTS S/W: ARM		
유압유 수준						엔진, 약제사리, 전선, 링케이지, 라인 상태			PWR SEL S/W: BAT then OFF => emer'LT on		
오일냉각기판 상태, 미션오일, M/R 헤드						엔진 흡입구 청결상태, 외부이물질 여부			PWR SEL S/W: BAT		
M/R 헤드캡, 스와시플레이트, 벨로우						배기구, V-밴드, 엔진마운트 상태			EMER LTS S/W ON => emer'LT on		
블레이드 연결볼트, 드라이빙 링크 상태						X-MSN실 누유, 외부이물질			EMER LTS S/W: ARM		
Rotating 콘트롤로트 및 베어링 상태						오일냉각덕트, 스크린, 오일탱크 장착상태			Voltmeter 지시치 확인(약 26볼트)		
Vibration 업서버, 블레이드 및 트림탭						엔진오일탱크 오일량, 오일색깔(PO)			PWR SELECT S/W: EXT PWR(EXT전원연결 시)		
Maintenance steps 점검						X-MSN, 필터Clogging, 스트러트, 휠러캡			PWR ON 상태 기내 추가점검(F.M.4.3.4)		
FUSELAGE-RIGHT SIDE(aft area)			PR	TR	PO	믹싱레버, 오일바이패스밸브, 오일라인			배터리 분리(외부전원 분리)		
L/G & Step, Vents/drain ports 상태						Input shaft seal cover 상태			OPTIONAL EQUIPMENTS		
X-MSN 누유, 외부이물질 여부						Maintenance steps 수납			FMS10-6.4-1.로터브레이크 점검		
오일냉각덕트, 스크린, 오일탱크 장착상태						L/G & Step, Vents/drain ports 상태			FMS10-14.4-1.카고 후크 점검		
엔진오일탱크 오일량, 오일색깔(PO)						연료캡 닫힘, 동체좌측 전반적 상태			FMS10-15.4-1.카고 후크 미러 점검		
X-MSN, 필터Clogging, 스트러트, 휠러캡						승객, 조종석 도어 상태, FA Kit 탑재			FMS10-22.4-1.통신/항법장비 점검-king		
믹싱레버, 오일바이패스밸브, 오일라인						동· 정압구 상태			FMS10-23.4-1.부조종석 항법장비 점검		
Input shaft seal cover 상태						드레인포트, 하부윈도우, 조종실공기흡입구			FMS10-29.4-1.3-Axis CSAS 점검		
엔진실 누유, 외부이물질						NOSE AREA			PR	TR	PO
엔진, 약제사리, 전선, 링케이지, 라인 상태						조종실 윈드쉴드, 와이퍼, OAT벌브 상태			FMS10-31.4.1.Standby Horizone 점검		
엔진 흡입구 청결상태, 외부이물질 여부						배터리상태 & 연결, 벤트튜브, 전자장비 상태			FMS10-40.4-1.난방장치 점검		
배기구, V-밴드, 엔진마운트 상태						EPU Access door 닫힘			FMS10-60.4-1.구조원치시스템 점검		
Maintenance steps 수납						EPU C/B In, BATT Vent, 착륙등 상태			FMS10-65.4-1.E.L.T 점검		
소화기압력, Red bursting plate, 방출구						동체하부 바닥 상태			FMS10-67.4-1.레벨링 장치 점검		
후방엔진카울링 장착 상태						INTERIOR			PR	TR	PO
동체우측, Calm shell doors 상태						의자, 페달 조절, 벨트고정, 자동타 릴 점검			기타 장비(밤비마켓, 방송장비 등)안전성		
Calm shell doors 래치, Open lock stay						전방릴 승객 Seat back 접힘 점검			WORK AROUND CHECK-BEFORE STARTING		
수화물실, Loose equipment 안전성						모든 C/B: IN, NAV/COMM: OFF			모든 점검창 닫힘, 고정 및 장애물 확인		
객실 바닥 상태						Both pwr 레버: OFF, OVSP TEST S/W: OFF			BEFORE NIGHT FLIGHT		
TAIL BOOM			PR	TR	PO	COLD START S/W: NORM, HYD TEST S/W: NORM			내.외부 모든 Lights, 후레쉬 작동검사		
우측-봄, D/S 페어링, 수평-직안정판, 위치등						소화기 & 방수렌턴: 탑재,			CLOSE-UP		
미부등, 수직핀, 카울링, 충돌방지등, 스키드						PWR SELECT S/W & BUS-TIE(2) S/W: OFF			헬기&장비 전반 상태, 항공일지 등 정리		
TGB 오일량, 필러캡, 드레인스크류 안전성						INVERTER(2) & GENERATOR(2) S/W: OFF			1.2 엔진실, 연료 & 오일 필터 바이패스 여부		
									헬기 도어 닫음, 필요시 타이-다운		

210mm × 297mm [백상지 80g/㎡]

BELL 430 일일점검표(제35조 제3항 관련)

일자	20 . . .	정비사	PR(비행전)	TR(비행간)	PO(비행후)	조종사 기 장	PR(비행전)	TR(비행간)	PO(비행후)	항공대장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검 사 항 목			
BEFOTR EXTERIOR CHECK			PR	TR	PO		POSITION LIGHT			
커버 / 타이다운 제거							AFR SKID CROSSTUBE ATTACHMENT			
탑재용 항공일지 / 비행교범 탑재여부 확인							LEFT SKID TUBE			
배터리 / 로타 브레이크 OFF							FUSE LAGE-LEFT SIDE			
소화기, 연료 샘플 / 연료량 확인							PR			
각종 등화 작동 상태							TR			
FUSE LAGE-RIGHT SIDE			PR	TR	PO		PO			
STATIC PORTS							ENGINE AREA ACCESS DOOR			
조종석 및 승객실 도어 / 창							ENGINE INLET - 커버 제거 및 이물질 제거			
승객실 도어 비상 탈출 장치							ENGINE GENERAL CONDITION			
메인 로터 상태							ENGINE REAR DRIVESHAFT/COUPLING INDICATORS			
전방 스킴드 크로스뷰브 상태							EVIDENCE OF FUEL AND OIL LEAKAGE			
유압계통 점검							ENGINE MOUNTS			
- HYDRAULIC AREA ACCESS DOOR							ELECTRICAL AND MECHANICAL CONNECTIONS			
- HYDRAULIC FILTERS BAPASS INDIC							FUEL AND OIL FILTER BYPASS INDICATORS(3)			
- HYDRAULIC RESERVOIR							OIL COOLER DRIVE AND BLOWER			
- HYDRAULIC ACTUATORS							ENGINE AREA ACCESS DOOR			
상부 트랜스미션 상태							호이스트			
점검창							WING			
FLIGHT CONTROL LINKAGE							ENGINE TAILPIPE			
							OIL COOLER - 상태 및 누유흔적 확인			
							RIGHT WING			
							RIGHT WING			
							WING TIP FAIRING			
							POSITION LIGHT			
							AFR SKID CROSSTUBE ATTACHMENT			
							RIGHT SKID TUBE			
							CARGO HOOK			
							FUSE LAGE-AFT WING			
							PR			
							TR			
							PO			
							FUEL FILLER CAP			
							BAGGAGE COMPARTMENT			
							CONTENTS			
							SMOKE DETECTOR			
							ELT			
							BAGGAGE COMPARTMENT DOOR			
							BATTERY COMPARTMENT DOOR			
							RIGHT FIRE EXTINGUISHER BOTTLE			
							FUSELAGE UNDERSIDE			
							DRAIN AND VENT LINES			
							TAIL ROTOR ACTUATOR COVER SCREEN			
							LOWER ANTI-COLLISION LIGHT			
							TAILBOOM-RIGHT SIDE			
							PR			
							TR			
							PO			
							TAILBOOM			
							HORIZONTAL STABILIZER AND AUXILIARY VERTICAL FIN			
							TAIL ROTOR DRIVESHAFT COVERS			
							TAIL ROTOR GUARD, TAILSKID, POSITION LIGHT			
							VRETICAL FIN, GEARBOX FAIRING			
							TAILBOOM-LIFT SIDE			
							PR			
							TR			
							PO			
							TAIL ROTOR GEARBOX			
							TAIL ROTOR HUB, BLADES			
							TAIL ROTOR BLADE FEATHETR BEARING LUBRICATION			
							TAIL ROTOR PITCH CHANGE CONTRON LINKAGE			
							HORIZONTAL STABILIZER AND AUXILIARY VERTICAL FIN			
							TAIL BOOM			
							FUSELLAGE-AFT WING			
							PR			
							TR			
							PO			
							LEFT FIRE EXTINGUISHER BOTTLE			
							메인로타 상태			
							LEFT WING			
							PR			
							TR			
							PO			
							RIGHT WING			
							WING TIP FAIRING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5호 서식]

작업의뢰서(제36조제3항 관련)

의뢰처			입고예정일자		
항공기명 (장비명)		모델번호		일련번호	
등록부호 (기관기호)	HL(서울 호)	기관번호		사용시간	
주요작업 사 항					
세 부 작 업 내 용					
순위	부품번호	작업실시 및 소요부품	구 분	소요량	비 고
(부족시 첨부사용 기록)					
작업의뢰관 소속:		직책: 항공대장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6호 서식]

항공기 외주계약정비 입회감독일지(제36조제4항 관련)

				결재	담 당	항공대장
00년 00월 00일 ~ 00월 00일 (00일간)						
소 속	기 중	호 기	시행업체	검사정비명		공정률 (%)

☐ 검사정비 내용

구 분	분야별	결 과			미해소	비고
		작업내용	작업인원	소요인시		
주기검사						
상태결함						
특이사항						

☐ 자재 사용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 주요구성품 장탈착 현황

연번	품 명	규 격	수량	탈 거		장 착		비고
				일련번호	사용현황	일련번호	사용현황	
	계							

※ 비고

정비결과는 작업내용과 자재사용내역이 포함되어야 하고, 해외 재생수리 결과는 수출·입 선적서류로 대체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7호 서식]

외주계약정비 검사조서(제36조제4항 관련)

검 사(수리) 조서(총괄)(제39조 제4항 관련)

- ☐ 공 사 명 :
- ☐ 공사금액 :
- ☐ 공사기간 :
- ☐ 시공업체 :
- ☐ 준공연월일 :
- ☐ 합격 여부 :

상기 00000를 시행한 바 그 작업사항은 계약서, 검사기준서 및 그 밖의 관계서류에 의 한 조건과 서로 다름이 없으며 별지내역과 같이 검사완료함.

0000. 00. 00

검사자 계급 성명 (인)
입회자 계급 성명 (인)

검사(수리) 조서

검사(수리) 구 분	검사(수리) 내역	검사결과	비고
1.수행내용	○ 정 비 명 : ○ 기 간 : ○ 장 소 : ○ 수행업체 : ○ 정비방법 : ○ 수행내용 :		
2.소요금액			
3.검사방법			
4.검사결과			

210mm×297mm[백상지 80g/m²]^①

검 사 기 준 서

1. 검사정비명 :
2. 공사금액 :
3. 공사기간 :
4. 준공연월일 :
5. 정비목적 :
6. 검사방법 :
7. 검사기준

연 번	검사기준	검사방법	검사결과
1			
2			
3			
4			

0000. 00. 00

검사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입회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18호 서식]

탐재용 항공기 일지(제38조제1항 관련)

탐 재 용 항 공 일 지

관리번호	기 록 기 간
제 권	201 . . ~ 201 . .

전남소방항공대

□ 항공기 이력

항 공 기	TYPE OF A/C	회전익 항공기	감 항 유 별	회전익(수송) ROTOR CRAFT(TA & TB)
	국 적 및 등 록 기 호	HL 9459	등 록 번 호	제 2007 - 122 호
	형 식	BELL 430	등 록 년 월 일	2007 년 12 월 5 일
	제 조 번 호	49104	형 식 증 명 번 호	제 호
	제 조 자	BELL HELICOPTER	감 항 증 명 서 번 호	제 AB09025 호
	제 조 년 월 일	2005 년 4 월 일	감 항 검 사 일 자	년 월 일
발 동 기 형 식 및 출 력		250-C40B (808HP)	ENGINE TYPE	TURBO SHAFT
MAIN ROTOR 형 식		BEARINGLESS ROTOR SYSTEM	ENGINE POWER	808 마력 2 개
비 고				

탑재용 항공일지 작성 요령

1. DAY, MON, YEAR : 비행한 일, 월, 연 기록(예 : 2. MAY. 2011)
2. LOG PAGE : PAGE가 부족하여 이월시(O) 표시하여 사용함
3. LED : 임무에 따라 시동을 끄지 않은 상태 또는 시동을 끈 상태를 비행한 임무의 횟수 기록
4. CREW : 승무원 및 탑승자 명단 기록
 - PIC : 기장, CO : 부기장, MECH : 정비사, EMT : 응급구조사, R : 구조대원, 탑승자 : 승객
5. STATION : 항공기 출발지와 착륙지 기록
6. FLIGHT TIME : 항공기 엔진 시동에서 엔진 정지까지의 시간 기록
7. TIME IN SERVICE : 항공기 이륙에서 다음 착륙한 까지의 시간 기록
8. GROUND TIME : 항공기 엔진이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GROUND 시간 기록
9. PURPOSE : 비행 목적 기록
10. PIC SIGNATURE : 정조종사 서명
11. AIRCRAFT MAINTENANCE SCHEDULE : 항공기 최근에 수행한 정시검사, 비행시간, 날짜 기록
12. NEXT INSPECTION TIME : 항공기 차기 정비검사 및 잔여 비행시간 기록
13. TOTAL AIRCRAFT TIME : 항공기 기체 총 시간, 착륙 횟수, 엔진 총 시간, 당일 비행시간 기록
 - PREVIOUS : 작일 항공기 기체 총 시간, 착륙 횟수 및 엔진 총 시간 기록
 - TODAY : TIME IN SERVICE 시간 기록
 - TOTAL : PREVIOUS + TODAY 기록
14. ENGINE START : 엔진 시동 횟수 기록
 - PREVIOUS : 작일 엔진 시동 총 횟수 기록
 - TODAY : 당일 시동 횟수 기록
 - TOTAL : PREVIOUS + TODAY 횟수 기록
15. HOIST : 사용시간 및 횟수 기록
16. CARGO HOOK : 카고훅 사용 횟수 기록
17. MAINT' DONE : 비행 전, 중간, 비행 후 항공기 점검 기록
 - 비행 전 점검 : PR, 중간점검 : TR, 비행 후 점검 : PO로 기록
18. DATE : 비행 전, 중간, 비행 후 점검을 실시한 날짜 기록
19. TIME : 비행 전, 중간, 비행 후 점검을 실시한 시간 기록
20. STA : 비행 전, 중간, 비행 후 점검을 실시한 장소 기록

21. CO-PILOT : 부조종사 서명
22. ACCEPTED BY : 정조종사 서명
23. FUEL : 비행 전 연료 총량과 비행 후 연료 보급량 및 총량 기록
24. RELEASED BY : 정비사 서명
25. LICENSE No. : 정비면허 번호
26. LUBRICATION OIL : No.1/2 엔진, X-MSN, T/R G/B 오일 보급량 기록
27. ORDER DESCRIPTION : 항공기 결함 내용 또는 검사 사항을 기록
28. CORRECTIVE ACTION : 27항목 수행한 결과, 수행지역, 날짜, 수행자 서명 기록

FLIGHT & MAINTENANCE LOG				A/C TYPE : BELL430		REG No. : HL 9459		DAY MON YEAR . . .		1 3	2 4
-------------------------------------	--	--	--	-----------------------	--	----------------------	--	-----------------------	--	--------	--------

LEG	CREW					STATION	FLIGHT TIME				
	PIC	CO	MECH	EMT	R	FORM - TO	FROM	TOI	DAY	NIGHT	IFR
1											
2											
3											
4											
5											

탑승자 :

LEG	TIME IN SERVICE			GROUND TIME	PURPOSE	PIC SIGNATURE	AIRCRAFT MAINTENANCE SCHEDULE			
	T/O	L/D	A/T				INSP' TYPE	A/C TIME	DATE	
1							LAST INSP'	HRS	:	
2										
3							NEXT INSPECTION TYPE		HRS	
4							REMAINING TIME		:	
5										

TOTAL AIRCRAFT TIME					ENGINE START		HOIST		CARGO HOOK
ITEM	A/C TIME	LANDING	No.1 ENGINE	No.2 ENGINE	No.1 ENGINE	No.2 ENGINE	TIME	CYCLE	
PREVIOUS	:		:	:			:		
TODAY	:		:	:			:		
TOTAL	:		:	:			:		

LEG	AIRCRAFT ACCEPTED						FUEL		
	MAINT' DONE	DATE	TIME	STA	CO-PILOT	ACCEPTED BY	GRADE	SERVICE(l)	TOTAL(lbs)
1		.	:				JET A-1	1	lbs
2		.	:				JET A-1	1	lbs
3		.	:				JET A-1	1	lbs
4		.	:				JET A-1	1	lbs
5		.	:				JET A-1	1	lbs
6		.	:				JET A-1	1	lbs
7		.	:				JET A-1	1	lbs
8		.	:				JET A-1	1	lbs

LEG	MAINTENANCE RELEASE						LUBRICATION OIL			
	MAINT' DONE	DATE	TIME	STA	RELEASED BY	LICENSE No.	No.1 ENGINE (6 Q/T)	No.2 ENGINE (6 Q/T)	X-MSN (12.5 Q/T)	T/G/B (0.65 Q/T)
1		.	:							
2		.	:							
3		.	:							
4		.	:							
5		.	:							
6		.	:							
7		.	:							

LEG	MALFUNCTION	LEG	CORRECTIVE ACTION (STATION, DATE, SIGNATURE CERT NO. etc)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20호 서식]

정 비 이 월 기 록 부(제38조제1항 관련)						
(DEFER ITEMS RECORD)				A/C NO. : HL		
REPORT NO.	MALFUNCTION - 이월시 기록			CORRECTIVE ACTION(CLEARED) - 해소시 기록		
	LOG PAGE	DATE	NAME (STAMP)	LOG PAGE	DATE	NAME (STAMP)
	LOG ITEM NO	STATION		LOG ITEM NO	STATION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21호 서식]

저장 탱크 & 급유장치 점검표(제43조 관련)

20 년 월 일

구분	점 검 내 용	일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저장 TANK	Tank Sump Drain & 수분검사 (시약검사, 주1회)																															
	Tank 누유상태																															
	Tank 주변상태																															
차량 탱크	Tank Sump Drain & 수분검사 (시약검사, 주1회)																															
	급유호스 상태 점검																															
	노즐상태 및 압력 점검																															
	연료누유 상태 점검																															
	접지선 접속상태 및 클램프 점검																															
	누유 및 청소 상태 점검																															
	연동장치의 오버라이드 S/W 및 유량계 봉인상태 점검																															
점검자 확인																																
관리자 확인																																
참 고		《표기방법》 V : 정상 △ : 수리요망(사용가능) X : 비정상(즉시 수리) O : 시정, 수리완료																					《필터 교환주기》 저장탱크 : 년 월 유 조 차 : 년 월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22호 서식]

신임조종사 교육비행 평가표(제46조제3항 관련)

기 중 : 평가일시 :

피평가자 성명				개인 총비행시간			
총 교육 비행시간:		기본비행교육:		소방활동비행교육:			
단계	평가사항	평점	단계	평가사항	평점		
기본비행교육	1.임무계획		소방활동비행교육	옥상이착륙	1.정찰요령		
	2.비행전검사				2.접근 및 착륙		
	3.시동 및 시운전				3.제자리비행		
	4.제자리비행				4.이륙		
	5.정상 이착륙			인명구조	5.HOIST인명구조		
	6.최대성능이륙/깊은각 접근 착륙				6.구조낭인양 접근 착륙 및 인양이탈		
	7.지면으로부터 이륙/얕은각 접근착륙				7.구조낭운용 시 응급조치		
	8.경사지/제한지 이륙 착륙				8.Rescue Seat 난 구조) 운용		
	9.활주착륙/복행			산불진화	9.밤비베스킷 운용		
	10.자동비행장치 운용				10.벨리탱크 운용		
	11.야간비행			기타	11.		
	12.비상절차				12.		
	13.무전교신				13.		
	14.비행후 검사			※평점기준 수 : 91 ~ 100점 우 : 81 ~ 90점 미 : 71 ~ 80점 양 : 61 ~ 70점 가 : 60점 이하			
평가자 종합의견							
종합평점		수 우 미 양 가(해당 평점에 ○표)					

평 가 관 :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항공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23호 서식]

신임정비사 정비교육 평가표(제48조제2항 관련)

기 중 :

평가일시 :

피평가자 성명				개인 총비행시간			
총 정비교육시간 :			정비교육 :		소방활동교육 :		
단계	평 가 사 항	평 점	단계	평 가 사 항	평 점		
정 비 교 육	1.항공기소개		소 방 활 동 교 육	일 반 사 항	1.지상안전		
	2.AIRFRAME				2.항공기유도		
	3.L/GEAR SYSTEM				3.비상시 처치방법		
	4.M/R SYSTEM				4.기타		
	5.T/R SYSTEM			인 명 구 조	5.HOIST 작동법		
	6.POWER TRAIN				6.RESCUE SEAT 운용요령		
	7.FUEL/OIL SYSTEM				7.구조낭 장착법		
	8.HYDRAULIC SYSTEM				8.구조낭 운용시 응급조치		
	9.R.E.I SYSTEM			산 불 진 압	9.밤비베스킷 장착 및 주의사항		
	10.ENGINE SYSTEM				10.벨리탱크 장착 및 주의사항		
	11.주기점검 시한성교환품 및 수리품			항공 방제	11.SPRAY 탱크 장착 및 주의사항		
	12.항공법/정비문서관리						
	13.지상장비소개 및 작동법						
	14.정비행정/기타			※평점기준 수 : 91 ~ 100점 우 : 81 ~ 90점 미 : 71 ~ 80점 양 : 61 ~ 70점 가 : 60점 이하			
평가자 종합의견							
종합평점		수 우 미 양 가 (해당평점에 ○표)					

평 가 관 :

(서명 또는 인)

확 인 관 :

항공대장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항공구조구급대 운영 규정[별지 제24호 서식]

항 공 기 사 고 보 고 서 (제53조제4항 관련)				
①사 고 발 생 일 시				
②사 고 발 생 장 소				
항 공 기	③기 종 및 형 식		④등 록 기 호	
	⑤비행구간		⑥소유자 등	
	⑦최종출발지 및 시간		⑧목적지및도착예정시간	
	⑨승무원수 및 승객 수			
⑩사고내용(6하 원칙에 의거)				
⑪피 해 내 용		☐ 인 명 : ☐ 항공기 : ☐ 기 타 :		
⑫조 치 내 용(인명구조 등)				
⑬기타 사고와 관련된 사항				
20 . . . () 운 항 통 제 관 (담당자 : - - 성명 :)				

210mm×297mm[백상지 80g/㎡]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7호

공시송달 공고

「전기공사업법」 제9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제24조(전기공사의 표시의 게시 등) 위반업체에 대해 같은 법 제46조(과태료)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과태료 부과),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규정에 따라 과태료 납부 이행 촉구서를 우편(등기)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인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1. 공 고 명 : 전기공사업법 위반업체 과태료 납부 촉구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15. 10. 29. ~ 11. 12.(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등록 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위반내용	과태료	반송 사유
서울 -04157	(주)이공하이텍 (김창환)	전남 나주시 청동길 92 (산도동)	기술자변경 지연신고	1,386천원 (본세 1,000천원, 가산금 386천원)	이사
전남 -01472	지성이엔지(주) (김영권)	전남 신안군 도초면 서남문로 1305	전기공사 표시의 미게시	1,386천원 (본세 1,000천원, 가산금 386천원)	이사

4. 기타사항

- 가. 과태료를 계속 체납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가산금(과태료의 100분의 5) 및 증가산금(과태료의 1천분의 12)이 가산 부과됩니다.
- 나. 공시송달 대상자는 공고 기간 내에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에서 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납부하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압류함을 알려드립니다.
- 다. 문의사항은 전라남도 에너지산업과(061-286-72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8호

발굴 매장문화재 소유자 유·무 확인 공고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의거 전라남도 관내에서 발굴조사 하여 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유자 유·무를 확인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1. 소유자 유·무 확인 대상 발굴 매장문화재 : 다음
2. 공고기간 : 2015. 10. 29 ~ 2015. 11. 5
3. 발굴매장문화재 열람 장소 : 전라남도 문화예술과
4. 소유권 주장 관련 자료제출

발굴 매장문화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후 90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전라남도지사(참조 : 문화예술과장, 전화 061-286-5443, FAX 061-286-4772)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당한 근거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소유자 유·무 확인 대상 발굴 매장문화재

연 번	유 물 명	수량	조사지역(유적명)	조사기관, 보관처	조 사 기 간
1	시루 등	74점 (19상자)	화순군 이양면 장치리 일원 (화순 장치 독높이기 내 유적)	경상문화재연구원	' 12.4.13~' 14.1.4
2	도기동체부편 등	66점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 (강진 전라병영성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1.8.9-9.30
3	갈유자구연부 편 등	693점	강진군 병영면 성동리 319-10 (강진 전라병영성지)	한울문화재연구원	2012.3.12-8.8
4	갈판 등	259점	광양시 성황동 용장 일원 (광양 국도우회도로 내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 12.11.5~' 13.1.8
5	도기구연부 등	179점	광양시 광양읍 산1-2 (광양 영세공원조성지 내 유적)	마한문화연구원	2012.6.25-7.17
6	구연부	1점	나주시 다시면 북암리 905-176 (나주 북암리 상수도공사지 내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12.3-12.6
7	개 등	365점	나주시 동강면 진천리 일원 (나주~동강 도로구간 내 유적)	마한문화연구원	2012.5.7~11.22
8	갈돌 등	2417점	나주시 운곡동 일원 (광주전남 혁신도시 내 유적)	마한문화연구원	' 08.3.27~' 11.4.15
9	옹관편 등	382점	나주시 오량동 산27 (나주 오량동 요지 6차)	나주문화재연구소	2009.4.23-11.27
10	합 등	19점	순천시 용당동 327 일원 (순천 용당동 도로공사 내 유적)	순천대학교박물관	1995.10.27-11.28
11	철도자 등	939점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25-1 (순천 운평리 고분군 2차)	순천대학교박물관	' 07.11.23~' 08.2.20
12	개 등	259점	순천시 서면 운평리 산16-1 (순천 운평리 고분군)	순천대학교박물관	' 11.11.1~' 12.2.24
13	암키와 등	48점	신안군 흑산면 진리 641 일원 (신안 흑산도 추정 관사터)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1.7~1.15
14	관정 등	16점	신안군 신의면 상태서리 90-1 (신안 상서 고분군)	마한문화연구원	2012.10.24-12.26
15	신안선 등	1점	신안군 증도면 방축리 (신안 도덕도 인근해역 수중발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81.6.23~' 84.9.17
16	가락지 등	44점	여수시 웅천동 1420-1 (여수 이충무공 자당기저지)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2.8.27-8.31
17	고배대각 등	53점	여수시 상암동 일원 (여수 국가산단 도로구간 내 유적)	태산문화유산연구원	2011.8.26-10.4
18	도기 동체부 등	11점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 일원 (영광 상오 농촌용수개발지 내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10.15-10.29

연 번	유 물 명	수량	조사지역(유적명)	조사기관, 보관처	조 사 기 간
19	석축 등	1점	영암군 학산면 금계리 산57-6 (목포~광양 진입도로 내 유적)	태산문화유산연구원	2011.6.20~7.21
20	무문토기 동체부편 등	6점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 (영암 엄길리 지석묘)	동북아지석묘연구소	’ 10.12.30~’ 11.2.17
21	원통형토기 등	20점	영암군 시종면 옥아리 159-2 (영암 옥아리 방대형 고분)	나주문화재연구소	2013.3.25~6.30
22	완도선 등	1점	완도군 약산면 어두리 (완도 약산도 해저 수중발굴)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 83.12.19~’ 84.5.23
23	갈돌 등	499점	장성군 황룡면 장산리 (호남고속철도 건설구간 내 유적)	호남문화재연구원	’ 11.4.11~’ 13.7.12
24	개 등	252점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일원 (장흥 장평 제2농공단지 내 유적)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3.11~5.13
25	갈돌 등	209점	장흥군 장흥읍 행원리 798-10 (목포~광양 장흥나들목 내 유적)	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1.5.18~5.20
26	방추차 등	14점	장흥군 장평면 봉림리 494-3외 (유치~이양 도로공사지 내 유적)	동신대학교박물관	2011.1.3~4.19
27	수키와 등	185점	장흥군 관산읍 농안리 740 (장흥 천관사 주불전지 내 유적)	불교문화재연구소	2011.3.2~5.30
28	암키와 등	6점	함평군 대동면 강운리 산64-1 (함평 월광비전타운 내 유적)	민족문화유산연구원	2013.11.11~11.30
29	구연부편 등	41점	함평군 나산면 덕림리 748-2 (함평 고막원천 제방공사 내 유적)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2.5.21~7.2
30	갈판 등	244점	화순군 이양면 품평리 일원 (화순 품평리 농경지사업 내 유적)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1.10.17~12.29

전라남도 공고 제2015-889호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 공고

「지방자치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의회에 부의할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라남도 코리아인터내셔널서킷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을 제6장으로 하고, 제5장을 신설한다.

제5장의 제목을 “모터스포츠 발전 및 경주장 활성화 지원”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를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제목을 “경비의 지원”으로 하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도지사는 모터스포츠 발전 및 국제자동차경주장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모터스포츠 선수 및 전문지도자, 경기진행요원의 육성 및 지원
 2. 모터스포츠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3. 국·내외 모터스포츠대회 개최 지원
 4. 모터스포츠 관련 국·내외 교류
 5. 모터스포츠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5-890호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 활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2. 제정사유
 - 「과학기술기본법」에 근거하여 도 산하 및 유관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의 정보공개와 통합관리 시스템을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조례 제정
3. 주요내용
 - 가.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계획수립 및 시행(안 제3조)
 - 매년 공동활용 계획수립·시행, 관련기관 자료 제공 등 협조 의무화
 - 나. 전담기관지정(안 제5조)
 - 연구개발 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가능
 - 공동활용 촉진 방안 수립, 실태조사 분석, DB 구축, 활용 교육 및 홍보 등 사업 수행
 - 다. 공동활용 실적 평가 및 평가 공개(안 제7조)
 - 매년 평가 후 결과 공개, 우수기관 및 유공자 등 포상
 - 라. 수요기관과 관리기관의 연구장비 유지관리 의무 부여(안 제8조)
 - 수요기관은 파손·손실 방지 의무, 주관기관은 장비 사용 가능상태 유지
 - 마.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안 제9조~제11조)
 - 운영협의회 15인이내 구성
 - 공동활용 기본계획 수립, 중복구입 점검,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 심의
4. 전라남도 연구개발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 다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61-286-3832, FAX : 061-286-4763)
 - 이메일 : hymi3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라남도 연구개발장비 등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전라남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에 따라 전라남도의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하는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장비”란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연구, 제품 연구개발과 제품의 시험생산 등을 위해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 및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2장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제3조(공동활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도지사는 과학기술 또는 연구개발장비의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도내의 연구기관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촉진방안 수립
2.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결과분석, 연구개발장비 데이터베이스 구축

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
4. 공동활용되는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료 지원 또는 사용료 감면
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 확보 및 제공
7.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 운영) ① 도지사는 수요기관의 연구개발 장비 이용의 편의를 위해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 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장비 활용지원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대상은 취득가격 1천만원 이상의 연구개발장비로 한다.

제7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도내 기관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그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발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 결과 공동활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유공자 등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장비의 유지관리) 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장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은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연구개발장비의 사용·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③ 수요기관은 수요자가 연구개발장비의 분실·훼손 등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변상조치 등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④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를 통상의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제9조(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 설치)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개발장비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과학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1. 전라남도 지역경제과장, 해양수산과학원·보건환경연구원·(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재)전남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 장비 총괄 부서장, 전남과학기술진흥센터장
2. 과학기술, 정치·경제·사회·문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제2항의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위원이 결원되면 지체 없이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위원을 지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 ⑥ 운영협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 부서장이 된다.
- ⑦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협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운영협회의 심의사항) 운영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방지방안에 관한 사항
3. 장비사용 수수료 책정에 관한 사항
4. 공동활용장비 우수기관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
6. 운영 시스템 보완 등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장 보칙

제12조(장비사용 수수료) ① 장비사용료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장비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제13조(운영협회 경비 등) 운영협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남도 공고 제2015-891호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공고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전라남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전라남도지사

1. 조 례 명 :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2. 개정사유
 - 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제도적 근거 마련
 - 조례상 과학기술진흥사업 범주에 과학기술연구개발 종합관리사업 포함
 - 연구개발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전주기 정보 제공 의무 명문화
3. 주요내용
 - 가. 과학기술 연구개발 종합관리 포함 (안 제12조 제1항)
 - 과학기술연구개발사업 →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종합관리 사업
 - 나. 연구개발 사업 수행기관 전주기 정보제공 의무 (안 제12조 제5항)
4.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 개정 조례안 : 다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5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전라남도지사(참조 :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 우534-700/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 지역경제과
 - (전화 : 061-286-3832, FAX : 061-286-4763)
 - 이메일 : hymi33@korea.kr
 - 의견제출 방법
 -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전라남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종합관리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도지사는 국·도비를 지원받아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관·법인·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공고 제2015-1390호

순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순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사전열람 공고합니다.

2015. 10. 29

순천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순천시 조례동 1729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위 치	명 칭	종류	규 모			사업시행자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시설명	면 적	연장(폭)	주 소	성 명	
조례동 1729 일원	조례동 자금성~새롬주방간 도로개설공사	도로	소로 2- 208, 209,210	3,411㎡	L=376m (8m)	장명로 30	순천시장 (도로과장)	실시계획인가일 ~ 2018. 12. 31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조서 : 다음
4.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5. 열람장소 : 순천시 도로과(☎061-749-6347) 및 도시과(☎061-749-6316)에 관계도서를 비치하오니 의견이 있을 때에는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편입 조서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이 해 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1	순천시	조례동	1265-4	답	122	19		순천시	
2	순천시	조례동	1268-6	답	19	17		순천시	
3	순천시	조례동	1586-7	도	5,541	12		국(건설부)	
4	순천시	조례동	1586-13	도	1,594	25		국(건설부)	
5	순천시	조례동	1729	도	726	32		순천시	
6	순천시	조례동	1269-2	답	153	153		순천시	
7	순천시	조례동	1274-6	답	131	131		순천시	
8	순천시	조례동	1272-2	답	282	282		순천시	
9	순천시	조례동	1276-1	답	1,722	88		순천시	
10	순천시	조례동	1313-7	답	94	94		순천시	
11	순천시	조례동	1313-4	답	182	182		순천시	
12	순천시	조례동	1265-1	답	1,186	7	순천시 조례동 1264	주식회사 태양	광주은행, 하나은행
13-1	순천시	조례동	1265-6	답	264 (1/4)	264 (1/4)	경남 밀양시 가곡4길 19,603호(가곡동,대승빌라)	김영호	
13-2					264 (1/4)	264 (1/4)	순천시 삼산로 103-13, 107동 401호(용당동, 현대아파트)	김영옥	
13-3					264 (1/4)	264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넘말로29번길 45, 101동507호(선학동, 희영무지개아파트)	김영현	
13-4					264 (1/4)	264 (1/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55번길 18-17, 101호 402호(태영맨션)	김영희	
14	순천시	조례동	1266	답	1,372	38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순천농협
15-1	순천시	조례동	1268-8	답	191 (1/2)	191 (1/2)	순천시 덕암동 377-15	오경록	
15-2					191 (1/2)	191 (1/2)	순천시 덕암동 408-1	오실록	

토 지 소 재 지				지 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주 소	성 명	이 해 관계인
번호	시	동	지 번						
16-1	순천시	조례동	1268-9	답	216 (1/2)	216 (1/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조명희	
16-2					216 (1/2)	216 (1/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17-1	순천시	조례동	1268-10	답	32 (1/2)	32 (1/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조명희	
17-2					32 (1/2)	32 (1/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18-1	순천시	조례동	1268-11	잡	760 (1/2)	1 (1/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조명희	
18-2					760 (1/2)	1 (1/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19	순천시	조례동	1268-13	답	504	504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한국전력공사
20	순천시	조례동	1312-2	답	408	408	순천시 봉화1길 85(조례동)	정옥희	한국전력공사, 순천농협
21	순천시	조례동	1313-17	답	94	94	보성군 별교읍 장양리 80	김길두	
22-1	순천시	조례동	1246-12	답	290 (1/4)	290 (1/4)	순천시 연향동 1344 현대아파트 201-1103	이종섭	
22-2					290 (1/4)	290 (1/4)	순천시 연향동 1344 현대아파트 201-1103	장영숙	
22-3					290 (1/4)	290 (1/4)		이양엽	
22-4					290 (1/4)	290 (1/4)		이재익	
합계						3,441			

편입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지장물 소재지	편입지장물 종 류	수량 및 면적	지장물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순천시 조례동1266-1	대문 (H1.6m*L3.0m)	1식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웬스(메쉬)	4m			
		관정(소형)	1식			
		건사	2식			
		정자 (철파이프 판넬)	16㎡			
		화분거치대	2식			
		계사(2*2)	1식			
		올타리 (철파이프 그물)	15m			
		이전비 (콤프레샤 등)	1식			
		화단 (자연석 포함)	1식			
		소나무	6주			
		장미	2주			
		향나무	2주			
		철쭉	2주			
		황금사철	4주			
		이팝나무	3주			
		동백나무	39주			
		호랑가시	1주			
		주목	8주			
		꽃사철	1주			
		느티나무	1주			
		포도나무	2주			
		향나무(小)	6주			
		등나무	2주			

일련 번호	지장물 소재지	편입지장물 종 류	수량 및 면적	지장물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1	순천시 조례동1266-1	모과나무	43주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치자나무	2주			
		단풍나무	3주			
		배롱나무	2주			
		매실나무	7주			
		석류나무	4주			
		무화과	1주			
		비파나무	1주			
		목련나무	1주			
		모과나무(大)	1주			
		산수유	5주			
		감나무	6주			
		단풍나무(小)	5주			
		은행나무	1주			
		윗나무	2주			
		엄나무	3주			
		사철나무	5주			
		사과나무	2주			
		팽팡이	2주			
		대추나무	1주			
		약나무	2주			
2	순천시 조례동1268-9	바닥포장 (콘크리트)	216㎡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조명희 이순근	
3	순천시 조례동1268-10	바닥포장 (콘크리트)	32㎡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조명희 이순근	

일련 번호	지장물 소재지	편입지장물 종 류	수량 및 면적	지장물 소유자		비 고
				주 소	성 명	
4	순천시 조례동1268-13	창고 (블록 스텔트)	106㎡	순천시 충효로 117-25, 101호(조례동, 성창빌라)	이순근	
		창고 (블록 스텔트)	8㎡			
		울타리 (메쉬 웬스)	12㎡			
		바닥포장 (콘크리트)	504㎡			
		화단	1식			
		동백나무	3주			
		철쭉나무	1주			
		사철나무	19주			
		매조나무	1주			
		편백나무	1주			
		이전비	1식			
		이전비	1식			
		간판 ("홍가네 왕족발 보쌈")	1식		홍가네 왕족발 보쌈	별도
계	4건					

나주시 고시 제2015-139호

세목 고시

도로법 제24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나주시 고시 제 2015-63(2015.5.13.)호로 도로구역결정(변경)고시된 『장동교 재가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의 세목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세목 고시합니다.

2015. 10. 29

나주시장

1. 사 업 명 : 『장동교 재가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나주시장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송월동 1100)
3. 사 업 구 간 : 나주시 노안면 용산리~나주시 노안면 학산리(0.37km)
4. 공 고 기 간 : 2015. 10. 29. ~ 2015. 11. 13.
5.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세목고시(토지)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총면적	편입 면적	단위	소 유 자		토 지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토지	1	노안 학산	782-306	답	643	27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2-153	노안 학산	782-337	답	38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토지	2	노안 학산	782-334	답	4	4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2-153	노안 학산	782-334	답	4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토지	3	노안 학산	782-333	목	6	6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2-153	노안 학산	782-333	목	6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토지	4	노안 학산	782-303	목	471	8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학산리 782-153	노안 학산	782-335	목	2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782-336	목	9	m ²						
토지	6	노안 학산	799-1	답	1,568	83	m ²	김종숙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4-18	노안 학산	799-16	답	69	m ²	김종숙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4-18				
토지	7	노안 학산	799-2	답	1,244	43	m ²	박명휘	광주시 서구 내방로25110 103동606호 (쌍촌동 광명하이츠타운)	노안 학산	799-17	답	34	m ²	박명휘	광주시 서구 내방로251번길 10, 103동 606호 (쌍촌동, 광명하이츠타운)	광주원에 농업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광산지점)	근저당	
토지	8	노안 학산	799-3	답	1,232	31	m ²	박명휘	광주시 서구 내방로25110 103동606호 (쌍촌동 광명하이츠타운)	노안 학산	799-18	답	26	m ²	박명휘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251번길 10, 103동 606호 (쌍촌동, 광명하이츠타운)	광주원에 농업협동 조합	광주광역시 북구 동문대로 260(광산지점)	근저당	
토지	9	노안 학산	799-4	답	1,517	21	m ²	황용연	광주시 서구 염화로40번길6 201동503호 (화정 우성아파트)	노안 학산	799-19	답	26	m ²	황용연	광주시 서구 염화로40번길6, 201동503호 (화정 우성아파트)	광주북부 새마을 금고	광주광역시 북구 서림로 109-1	근저당 지상권	

변 경 전									변 경 후											
구분	연번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총면적	편입 면적	단위	소 유 자		토 지 소재지	편입 지번	지목	편입 면적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토지	10	노안 학산	800-1	답	1,806	94	m ²	임행숙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1257-2	노안 학산	800-13	답	111	m ²	임행숙	광주시 서구 금부로 103번길 20-4				
토지	11	노안 학산	800-2	답	1,855	133	m ²	김재경	나주시 장림길 13-1	노안 학산	800-14	답	146	m ²	김재경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3-1	나주배 원예 농업 협동조합	나주시 청동길 32	근저당	
토지	12	노안 학산	800-3	답	1,847	150	m ²	강성경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1273 신정5차 현대아파트 501동 505호	노안 학산	800-15	답	161	m ²	강성경	곡성군 삼기면 원등4길 17-1				
토지	13	노안 학산	800-4	답	1,807	137	m ²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노안 학산	800-16	답	150	m ²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토지	14	노안 학산	800-5	답	863	34	m ²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노안 학산	800-17	답	37	m ²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토지	15	노안 학산	937-3	철	10,342	7	m ²	한국철 도공사		노안 학산	937-6	철	12	m ²	한국철도 공사 (광주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35(경영인사처)				
토지	16	노안 장동	76-17	답	1,145	228	m ²	한국철 도공사		노안 장동	76-27	답	207	m ²	한국철도 순천 시설공단 호남본부	순천시 역전길 16				
토지	17	노안 장동	77-28	답	164	1	m ²	한국철 도공사		노안 장동	77-31	답	1	m ²	한국철도 순천 시설공단 호남본부	순천시 역전길 16				

세목고시(지장물)

연번	구분	토 지 소재지	지번	구조	물건의 종류	편입면적 및수량	단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관계	
1	지장물	노안 장동	77-28, 77-29		배나무	11	주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2	지장물	노안 장동	77-28, 77-29		덕설비 (보수비포함)	1	식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3	지장물	노안 장동	77-28, 77-29		골담초	10	주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4	지장물	노안 장동	77-28, 77-29		철망 울타리	66	m	김용일	나주시 노안면 장림길 19-9				
5	지장물	노안 학산	782-303, 782-306	콘크리트	바닥포장	110	m ²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6	지장물	노안 학산	782-303, 782-306		사과나무	1	주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7	지장물	노안 학산	782-303, 782-306		자두나무	1	주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8	지장물	노안 학산	782-303, 782-306		감나무	1	주	조충현	나주시 노안면 노안로 527				

나주시 공고 제2015-1018호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전 서류열람 공고

나주시 영산동 17-4번지 일원 영산동주민센터~골모실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한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116호선)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전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나주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 치 : 전남 나주시 영산동 17-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나주 도시계획시설(도로 : 소로 2류116호선)사업

○ 명 칭 : 영산동주민센터~골모실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규모 및 면적

○ 면 적 : A= 1,317㎡

○ 규 모

구분	규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전체 연장	기시행 연 장	금회시행 연 장			
기정	소로	2	116	8	국지 도로	419	-	150	소로1-60호선 이창동 166-4대	소로3-56호선 영산동 17-4대	일반 도로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나주시장

○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13. 3. 5. ~ 2013. 10. 31.

○ 변 경 : 2013. 3. 5. ~ 2017.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 세목조서 : 다음

7. 실시계획 관계도서 : 게재생략(나주시 도시과에 비치)

8. 열람기간 : 게재일로부터 14일간

9. 열람 및 의견 제출장소 : 나주시 도시과(☎ 061-339-8975, Fax 061-339-2826)

편입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당초지번	분할후 지번	편입면적 (㎡)	지목	소유자		비고
						주 소	성 명	
1	나주시 영산동	17-4	17-11	189	대	공유지	나주시	
2	나주시 영산동	17-1	17-10	81	대	공유지	나주시	
3	나주시 영산동	16-5	16-17	1	임	공유지	나주시	
4	나주시 영산동	21-2	21-10	103	대	공유지	나주시	
5	나주시 영산동	23-2	23-5	28	대	국유지 공유지	기획재정부 나주시	
6	나주시 영산동	660	660	25	구	국유지	건설부	
7	나주시 영산동	38	38-1	43	대	공유지	나주시	
8	나주시 영산동	39-5	39-5	23	임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499 나주시 부덕동380 나주시 용산동144 나주시 부덕동235 나주시 용산동137 나주시 대기동44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697 나주시 왕곡면 장산리693	이종문 이규봉 이규상 이종석 이상인 이상민 이종관 이종휘	
9	나주시 영산동	17-9	17-12	7	대	공유지	나주시	
10	나주시 영산동	19-1	19-3	76	대	나주시 영산동 20	박영수	
11	나주시 영산동	21-3	21-11	29	대	공유지	나주시	
12	나주시 영산동	21-1	21-9	99	대	나주시 골모실길1-34(영산동) 공유지	노선미 나주시	
13	나주시 영산동	21-4	21-12	128	대	공유지	나주시	
14	나주시 영산동	21-6	21-14	71	대	공유지	나주시	
15	나주시 영산동	-	21-15	11	대	공유지	나주시	
16	나주시 영산동	21-7	21-17	14	대	공유지	나주시	
17	나주시 영산동	43-1	43-7	36	대	나주시 영산동43-1	임귀순	
18	나주시 영산동	43-2	43-8	85	대	공유지	나주시	
19	나주시 영산동	661-8	661-8	33	구	국유지	건설부	
20	나주시 영산동	42	42-2	133	대	공유지	나주시	
21	나주시 영산동	41	41-3	16	대	국유지 공유지	기획재정부 나주시	
22	나주시 금천면 고동리	39-1	39-12	86	대	공유지	나주시	
계		21필지	22필지	1,317				

편입 지장물 조서

[영산동주민센터~골모실길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소로2류116호선)]

일련 번호	지장물의 소재			물건의종류				물건소유자		이해관계인 (등기부등본)		비고
	토지 위치	지번	지목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나주시 영산동	17-12	대	창고	목조 및 블록조 함석지붕	11.0	m ²	영산동 17-4	손귀남			
				관정	가정용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20	m ²					
				수도		1	식					
				화단	자연석	1	식					
				자두나무		1	주					
				단풍나무		1	주					
				동백나무		1	주					
				철쭉	.	10	주					
				황금사철		1	주					
2	나주시 영산동	19-3	대	창 고	슬레이트	17.0	M2	영산동 20	박영수			
				건 사	슬레이트	1	식					
				담장	블럭	10	m ²					
				바닥포장	콘크리트	15	m ²					
3	나주시 영산동	43-7	대	주 택	슬레이트 함석	72.2	M2	영산동 43-1	임귀순			
				화장실	슬래브	5.7	M2					
				창고	철재합판	5.7	m ²					
				대문1	철재	1	식					
				대문2	철재	1	식					
				양어장	자연석	1	식					
				PVC관		1	식					
				바닥포장	콘크리트	40	m ²					
				담장		12.6	m ²					
				보일러실		1	식					
				장독대		1	식					

			화단		2	식						
			양다래나무	지주포함	1	주						
			포도나무		3	주						
			석류나무		1	주						
			장미		3	주						
			감나무		1	주						
			오가피나무		5	주						
			구기자나무		1	주						
			석류나무	묘목	20	주						
			양다래나무	묘목	50	주						
			메타세콰이어	묘목	30	주						
			구지뽕나무	묘목	10	주						
			화양목		5	균						

광양시 고시 제2015-200호

광양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및 도시계획시설(소로 2-174호선) 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광양 도시계획시설(소로 2-174호선)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0조, 제32조에 따라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 인가 고시 합니다.

2015. 10. 29

광양시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가. 교통시설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1	진입 도로	소로2-174호선	옥곡면 수평리 산1-1번지 일원	3,967	-	3,967	2009. 7. 13.	

나. 교통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진입 도로	• 소로 2-174호선 노선 선형변경	• 현지 지형에 적합하도록 도로선형의 변경

2. 실시계획 인가 고시

가.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수평리 산1-1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소로2-174호선)

○ 명 칭 : 국사봉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진입도로 개설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3,967㎡ (L=298m, B=6.5m)

라.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 성 명 : 광양시장(건설과장)

마.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예정일 : 2015. 10. 29.

○ 준공 예정일 : 2016. 12. 31. (14개월)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성명	주소
합 계				18필지	3,967		
1	수평리	111-4	답	282	282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2	수평리	111-5	답	31	31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3	수평리	111-6	임	30	30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4	수평리	112-2	대	8	8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5	수평리	113	답	40	40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6	수평리	114-1	창	8	8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7	수평리	120-1	답	39	39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8	수평리	120-2	답	24	24	전라남도	도유지
9	수평리	122-1	답	2	2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0	수평리	125-1	답	4	4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1	수평리	125-2	답	2	2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2	수평리	126	답	139	139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3	수평리	129-1	답	89	89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4	수평리	산160	임	508	508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5	수평리	산160-1	임	397	397	건설부	국유지
16	수평리	산161	임	1,091	1,091	광양시	전남 광양시 시청로 33
17	수평리	641	천	606	606	건설부	국유지
18	수평리	647	도	667	667	건설부	국유지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건설과(☎061-797-1923) 및 도시과(☎061-797-284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양시 공고 제2015-1767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공고

『자연재해대책법』 제1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압 신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광양시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 명칭 : 다압 신원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광양시장
- 주소 :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3. 사업시행 면적 및 규모

- 사업면적 : 10,113㎡
- 사업규모 : 사면정비 A=7,561㎡, 주택철거 9동, 이주보상 10세대

4. 사업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15년 10월
- 준공예정일 : 2016년 12월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다음

- 변경 공고 사유 : 지장물 조서 지번 정정

6. 실시설계도서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비치

7.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안전총괄과(061-797-3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명세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순번	소재지 (동리)	지번	지목	면 적(m ²)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계		24필지		14,761	10,113							
1	신원리	513-1	도	995	96		국	건설부				
2	신원리	518-1	도	102	6		국	건설교통부				
3	신원리	518-2	도	592	139		여상호	부산시 해운대구 선수촌 21번길 65, 304동403호 (반여동 현대그린맨션)				
4	신원리	518-4	도	276	177		국	건설부				
5	신원리	518-5	도	390	333		국	건설부				
6	신원리	518-6	도	17	13		국	건설부				
7	신원리	518-7	도	868	414		국	건설부				
8	신원리	518-8	도	106	86		국	건설부				
9	신원리	521-1	도	46	6		윤문유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17				
10	신원리	521-4	도	257	6	6/21	윤영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149-21 A동402호(아르떼)				
						15/21	국토 교통부					
11	신원리	521-3	도	157	8		국	건설부				
12	신원리	522-9	도	1,205	1		국	건설교통부				
13	신원리	538-4	대	312	312		진용택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1253				
14	신원리	538-5	대	306	306		강복달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 1251				
15	신원리	538-8	대	258	258	1/3	김진용	부산 북구 만덕대로 102번가로 11(덕천동)				
						2/3	김진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243				

순번	소재지 (동리)	지번	지목	면 적(m ²)		공유 지분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토지 대장	편입 면적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6	신원리	538-9	대	48	48	1/3	김진용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102번가로 11(덕천동)				
						2/3	김진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243				
17	신원리	1686-22	도	695	52		국	건설부				
18	신원리	산79-3	임	500	500		(주)동서 에코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5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16-47 논현빌3층	박정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50, 2동213호 (효성동, 신진아파트)	가등기	
									(주)세기 종합기술 공사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108-4 호성빌딩(4층)	가압류	
									진정근	전남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442	근저 당권	
									박정숙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서로 150, 2동213호 (효성동, 신진아파트)	근저 당권	
19	신원리	산79-4	임	190	190	400/ 1200	김명숙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166, 507동303호(화명동, 화명롯데캐슬카이저)				
						400/ 1200	김진용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102번가로 11(덕천동)	부산시 사상구 교통 행정과	부산광역시 사상구 학감대로 242	압류	
						1/3	김진수	전남 광양시 다압면 섬진강매화로 1243				
20	신원리	산80-10	임	6,795	6,795		김현숙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47				
21	신원리	산80-6	임	106	106		김현숙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 347				
22	신원리	산80-7	임	65	65		서철금	광양시 다압면 신원리 435				
23	신원리	산80-8	도	365	94		국	건설부				
24	신원리	산81-7	임	102	102		이기중	서울 광진구 구의강변로 11, 3동107호 (자양동, 한양아파트)				

□ 지장물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소유자 또는 임대인	
							주소	성명
1	소계							
	다압면 신원리	산80-7	주택	시멘트블럭, 기와	57.21	㎡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상가(신원남시)	시멘트블럭, 기와	31.95	㎡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상가(섬진강상회)	시멘트블럭, 기와	36.21	㎡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보일러		1	대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보일러유통		1	개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관정		1	식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위성안테나		1	대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관정		1	공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장독대		1	식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대문		1	식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47	서철금
2	소계		영업보상	신원남시	1	식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63-60	최동현
			에어콘실외기		1	대		
			냉장고		1	대		
			간판		2	식		
			cctv		1	식		
3	소계		영업보상	섬진강상회	1	식	다압면 원동길 25	김말례
4	소계							
	다압면 신원리	538-4	주택	경량철골조	104.565	㎡	다압면 섬진강매화길1253	진용택
			창고	블럭스레트	3.315	㎡		
			보일러실	블록, 경량철골조	8.845	㎡		
			에어콘실외기		1	개		
			녹차	6년생	100	주		
			물통(1톤)		1	개		
			매화나무	9년생	2	주		
			매화나무	20년생	2	주		
			모과나무	20년생	3	주		

			석류나무	7년생	1	주		
			부자나무	5년생	1	주		
			철죽나무		100	주		
			사과나무	5년생	3	주		
			소나무(주경)	20년생	2	주		
			비파나무	3년생	1	주		
			천리향	5년생	3	주		
			장미나무		2	주		
			홍화씨나무	4년생	3	주		
			포도나무		1	주		
			블루베리나무		6	주		
			기타나무		1	주		
			마당 조경석		23	개		
			철구통		1	개		
			대형화분		1	개		
			보일러		1	개		
			관정		1	공		
			수도		3	개		
			담장	블록	6.3	m		
			담장	테크	26.6	m		
			철재기둥	100mm	6	개		
			철조망		21.8	m ²		
			잔디마당		83.22	m ²		
			분재화분		100	개		
			축대		10.9	m		
			다압택시차고지					
			담배판매허가					
5	소계							
	다압면 신원리	산80-2	주택	블록, 스투트, 함석	40.625	m ²	다압면 신원리산80-2	김사인
			대문		1	식		
			보일러실	블록, 함석	2.52	m ²		

			장독대		5.75	m ²		
			계단		1	식		
			관정		1	공		
			수도		2	개		
			철구통		1	개		
			앵두나무	30년생	1	주		
			감나무(대본)	15년생	3	주		
			감나무(단감)	15년생	1	주		
			젠피나무	20년생	1	주		
			매실나무	10년생	2	주		
			보일러		1	대		
			보일러유통		1	개		
			마당	시멘트	9.9	m ²		
6	소계							
	다압면 신원리	538-5	주택	목조, 경량철골조	102.835	m ²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51	강복달
			식당	경량철골조	32.345	m ²		강복달
			식당	경량철골조	32.345	m ²		김용옥
			기차	경량철골조	33.2	m ²		강복달
			마당	시멘트	79.13	m ²		
			대문	테크	2	식		
			담장	블록	10.33	m		
			화단		6.08	m ²		
			장독대		2.76	m ²		
			보일러실		4.806	m ²		
			관정		1	공		
			창고	블럭스레트	4.09	m ²		
			굴뚝		0.945	m ²		
			아궁이	야외	1	개		
			감나무	15년생	2	주		
			드릅나무		24	주		
			업나무		4	주		

			치자나무		1	주		
			녹차나무		2	주		
			소나무	4년 3, 1년 69	72	주		
			석류나무	6년생	1	주		
			매화나무	4년 2, 7년 2	6	주		
			배나무	4년생	2	주		
			밤나무	3년생	1	주		
			무화과나무	3년생	1	주		
			젠피나무		1	주		
			앵두나무	5년생	2	주		
			모란꽃		1	주		
			천리향		4	주		
			철쭉		15	주		
			한라봉		2	주		
			밤나무		3	주		
			위성안테나		1	개		
			수도+배관					
			나무데크	11*15	1	식		
			황토방, 욕실		3	식		
			목재		10	톤		
			등근벽돌		2	톤		
7	소계		영업보상	뚝배기 국밥	1	식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51	김용옥
			간판		1	식		
			에어콘실외기		1	대		
8	총계							
	소계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43	김진수 (지분2/3)
	소계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102번가로11 (덕천동)	김진용 (지분1/3)
	다압면 신원리	538-8	주택	블록, 스테트	72.157	m ²		
			상가	블록, 스테트	29.93	m ²		
			창고	블록, 스테트	43.11	m ²		

			마당	시멘트	40.88	m ²		
			대문		1	개		
			담장	블록	5.2	m		
			화단		2.7	m ²		
			물탱크		1	개		
			골담초		20	주		
			은행나무	10년생	1	주		
			첼피나무		1	주		
			철쭉나무		5	주		
			감나무	20년생	1	주		
			살구나무	20년생	1	주		
			무화과나무		1	주		
			기타나무		1	주		
			위성안테나		1	식		
			세면대		1	식		
			계량기		1	식		
9	소계		영업보상	평화상회	1	식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43	김선자
			간판		1	식		
			평상		2	개		
			차양		1	식		
10	소계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43	김복수
	다압면 신원리	538-8	주택	블록,스라브 (2.9*3.7)+(4*4.8)	29.93	m ²		
			상가	블록, 스라브	22.39	m ²		
			갯방	경량철골조	17.2	m ²		
			가추		22.24	m ²		
			시멘트 기초(갯방)		18.4	m ²		
			마당	시멘트	45.12	m ²		
			관정		1	공		
			수도		2	개		
			매화나무	17년생 2, 25년생 1	3	주		
			첼피나무		1	주		
			녹차나무		1	주		

			동백나무		1	주		
			철쭉		1	주		
			가죽나무		1	주		
			계단		1	식		
11	소계		영업보상	원동슈퍼24시 편의점	1	식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41	김복수
			간판		1	식		
12	소계							
	다압면 신원리	산80-6	경로당	블록 스테트	35.48	m ²	다압면 신원리 산80-6	신원리 경로회
			상가(신원반점)	블록 스테트	99.73	m ²		
			담	담장 1.8*25	45	m ²		
			대문		1	식		
			충충나무		2	주		
			위성안테나		1	식		
13	소계		영업보상	신원반점	1	식	다압면 신원리 산80-6	이형규
			간판		1	식		
14	다압면 신원리	산79-4	밤나무		2	주	다압면 섬진강 매화로1243	김진수
15	다압면 신원리	산80-10	밤나무		100	주	경남 하동군 하동읍 광평리347	김현숙
			감나무		2	주		

광양시 공고 제2015-1776호

광양 도시계획시설(대로 3-6호선) 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54-16번지 일원 광양 도시계획시설(대로 3-6호선)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일반주민 및 이해관계인에게 공람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 10. 29

광양시장

1. 위치
 -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54-16번지 외 22필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 명 칭 : 도시계획도로(대로 3-6호선) 개설 사업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규모 : L = 150m, B = 25m, A = 6,871㎡
4. 사업시행자의 주소·성명
 - 주 소 :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
 - 성 명 : (주)그린시티 대표 김도운
5. 사업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7. 1.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다음
 - 수용할 필지 : 15필지 3,692㎡
 - 사용할 필지 : 16필지 3,179㎡
7. 관계도서 및 세부조서 : 게재생략(광양시청 도시과)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도시과(☎061-797-28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지 조서(수용할 필지)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42번지 외 14필지

NO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소 유 자		비고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주 소	성 명	
총 계				3,692			
1	산42	임	199	199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2	산43-4	임	403	403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1길 41	오선용	
3	산54-11	임	67	67	광주 북구 두암동 100 현대아파트 101-1303	김재진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4	산54-16	임	565	565	광주 북구 두암동 100 현대아파트 101-1303	김재진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5	산54-18	임	777	777	광주 북구 두암동 100 현대아파트 101-1303	김재진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6	산55-12	임	334	334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7	산55-16	임	1,485	3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근저당설정
					근저당권자 : 흥한건설주식회사-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544, 3층(동성동)		
8	산55-17	임	1,983	67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97, 511동 503호 (중흥에스클래스5단지)	허세웅	
9	산55-19	임	202	190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10	산55-22	임	270	176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889칠곡우방하이츠101-1905	홍주희	
11	산55-23	임	270	248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35-3신성아파트107-704	이승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6-10 수성2차이편한세상106-1305	김영희	
12	산55-30	임	630	594	전남 순천시 조례연동길 5, 303동1102호 (조례동,조례3차대주파크빌)	최광희	
13	산55-31	임	1	1	전남 순천시 조례연동길 5, 303동1102호 (조례동,조례3차대주파크빌)	최광희	
14	1017-1	전	1,662	2	광양시 광양읍 옥룡면 운평리 693	서병선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33 진성아파트B동201호	이상진	
15	1588	구	8,036	66		국(국토교통부)	

□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 산 43-2번지 외 15필지

NO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법면	구거	주 소	성 명	
총 계				3,179	2,955	224			
1	산43-2	임	526	171	171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1길 41	오선용	
2	산54	임	1,936	192	192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90	우재남	
							광주 북구 두암동 100 현대아파트 101-1303	김재진	
							전남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105-1505	김종우	
							전남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105-1505	정성희	
							전남 광양시 옥룡면 대흥길 14-41	신영임	
3	산54-2	임	1,435	391	391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8 금당대주아파트105-603	최래귀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90	우재남	
							광주 북구 두암동 100 현대아파트 101-1303	김재진	
							전남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105-1505	김종우	
							전남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105-1505	정성희	
4	산54-3	임	877	537	537		전남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390	우재남	
							광주 북구 두암동 100 현대아파트 101-1303	김재진	
							전남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105-1505	김종우	
							전남 광양시 중동 1418 무등파크 105-1505	정성희	
							전남 광양시 광양읍 인덕1길 41	오선용	
5	산55-16	임	1,485	101	101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근저당 설 정
							근저당권자 : 흥한건설주식회사-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544, 3층(동성동)		
6	산55-17	임	1,983	223	223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 97, 511동 503호 (중흥에스클래스5단지)	허세웅	
7	산55-18	임	182	182	182		전남 순천시 조례연동길 5, 303동1102호 (조례동, 조례3차대주파크빌)	최광희	
8	산55-19	임	202	5	5		전남 순천시 장선배기2길 5-18(조례동)	(주)그린씨티	
9	산55-22	임	270	94	94		대구광역시 북구 동천동889칠곡우방하이츠101-1905	홍주희	
10	산55-23	임	270	22	22		경상북도 경산시 중산동 35-3신성아파트107-704	이승주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동 1046-10 수성2차이편한세상106-1305	김영희	
11	산55-30	임	630	36	36		전남 순천시 조례연동길 5, 303동1102호 (조례동, 조례3차대주파크빌)	최광희	
12	1017-1	전	1,662	404	299	105	광양시 광양읍 옥룡면 운평리 693	서병선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133 진성아파트B동201호	이상진	
13	1018-1	전	387	275	173	102	전남 순천시 도장길 50, 201동 1602호 (연향동, 호반리젠시빌)	윤동혁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97, 509동302호 (중흥에스클래스5단지)	윤정혁	

NO	지번	지목	지적	신청면적(㎡)			소유자		비고
				합계	법면	구거	주 소	성 명	
14	1019	전	1,071	17		17	전남 순천시 도장길 50, 201동 1602호 (연향동, 호반리젠시빌)	윤동혁	
							전남 순천시 해룡면 신대로97, 509동302호 (중흥에스클래스5단지)	윤정혁	
15	1022-1	답	992	146	146		전남 순천시 조례동 1608 대주아파트 105-603	박정원	
16	1588	구	8,036	383	383			국(국토교통부)	

곡성군 고시 제2015-67호

곡성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고시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906-11번지 일원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사업명 :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하치장 기반조성】의 면적정정 및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합니다.

2015. 10. 29

곡성군수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전남 곡성군 석곡면 연반리 906-11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 부산물자원화센터 퇴비하치장 기반조성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당초) 39,269㎡ 중 11,789㎡(기 개발행위허가 27,480㎡)
변경) 39,264㎡ 중 11,784㎡(기 개발행위허가 27,480㎡)
- 건축연면적 : 7,590.34㎡
- 토지이용계획

(단위: ㎡)

구분	계	자원화용지	공공용지	녹지용지
당초	39,269	19,459	4,664	15,146
변경	39,264	19,459	4,664	15,141

4. 사업시행자

- 주 소 : 전남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 성 명 : 곡성군수(농정과)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당초 : 2014. 7. 24. ~ 2015. 5. 31.
- 변경 : 2014. 7. 24. ~ 2015. 10.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와 지번, 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7. 기타문의 : 곡성군 경제과(360-8305)

편입토지 조서

번호	토 지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편입면적(㎡)		소 유 자		비 고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 소	성 명	
총 계		7필지		39,269	39,264	39,269	39,264			
1	석곡면 연반리	906-2	임	113	113	113	113		건설교통부	
2	석곡면 연반리	산75-15	임	334	-	334	-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금회 시행
		911-1	임	-	329	-	329			
3	석곡면 연반리	906	장	21,848	21,848	21,848	21,848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4	석곡면 연반리	906-3	임	542	542	542	542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금회 시행
5	석곡면 연반리	906-8	임	4,426	4,426	4,426	4,426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금회 시행
6	석곡면 연반리	906-11	임	6,487	6,487	6,487	6,487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금회 시행
7	석곡면 연반리	906-9	임	5,519	5,519	5,519	5,519	곡성군 곡성읍 군청로 50	곡성군	

영암군 고시 제2015-59호

영암 성기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성기동관광지 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 「관광진흥법」 제54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제32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015. 10. 29

영암군수

1. 성기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관련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영암군청 문화관광체육과 비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문화관광체육과(☎061-470-23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영암 「성기동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1. 관광지명 : 성기동관광지(지정 ' 86.6.23, 변경지정 ' 99.5.12)
2. 위 치 :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일원
3. 지정면적 : 220,386㎡(변경없음)
4. 조성계획 : 220,386㎡(변경없음)
5. 조성기간 : 2001년 ~ 2012년(변경없음)
6. 사 업 비 : 9,194백만원(공공9,042백만원, 민자 152백만원)(변경없음)
7. 사업시행자 : 영암군수
8. 변경사유

○ 기 조성된 주요 시설물 등을 현황 및 조성계획(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용도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하고자 함

9. 관광지 조성계획 결정(변경) 세부조서

1) 조성계획 결정(변경) 총괄

구 분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주 요 도 입 시 설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20,386	220,386	-	100.00	세부시설 : 기정 28개 → 변경 33개
공공·편익 시설용지	28,373	25,774	감)2,599	11.70	○기정 : 유적관리사무소, 주차관리사무소, 도로, 화장실, 주차장, 취사장, 중앙광장 등
					○신규 : 창고, 매표소 ○변경 : 유적관리사무소, 소매점 및 화장실, 도로, 화장실, 주차장
숙박 시설 용지	4,888	3,662	감)1,226	1.66	산장, 야영장
운동·오락 시설용지	2,205	1,640	감)565	0.74	체력단련장, 모험놀이시설
휴양·문화 시설용지	60,741	70,746	증)10,005	32.10	○기정 : 청소년수련장, 문화열린마당, 논어광장, 왕인유적지, 전망대, 박물관, 쉼터, 비지터센터, 야외무대, 왕인로, 연지, 왕인정, 왕인묘역, 야외학습장, 천연잔디
					○신규 : 제실, 유적비, 왕인수석전시관, 한옥음식체험관 ○변경 : 비지터센터, 왕인유적지, 왕인정, 쉼터, 문화열린마당, 논어광장, 야외학습장, 천연잔디, 야외무대
상가 시설용지	1,435	1,435	-	0.65	음식점
기타 시설용지	122,744	117,129	감)5,615	53.15	녹 지

2) 조성계획 결정(변경) 시설별 세부 조서

구 분			토지이용면적(m ²)			시 설 규 모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m ²)		연면적(m ²)		동수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20,386	220,386	변경없음	3,178.33	4,106.95	4,309.96	4,876.58	58	49	-	-
시설 합계			97,642	103,257	▲5,615	3,178.33	4,106.95	4,309.96	4,876.58	58	49	-	-
공공 편의 시설	소 계		28,373	25,774	▼2,599	629.00	658.63	629.00	658.63	9	12	-	-
	1 변경	유적관리사무소	828	1,363	▲535	247.00	210.08	247.00	210.08	1	2	1	1
	2 변경	주차관리사무소	113	-	▲68	90.00	-	90.00	-	1	-	1	-
		소매점맞화장실	-	181		-	95.20	-	95.20	-	1	-	1
	3 변경	도로	10,496	8,456	▼2,040	-	-	-	-	-	-	-	-
	4 변경	화장실	440	630	▲190	256.00	211.72	256.00	211.72	6	5	1	1
	5 변경	주차장	11,312	9,790	▼1,522	-	-	-	-	-	-	-	-
	6 신규	매표소	-	15	▲15	-	8.94	-	8.94	-	1	-	1
	7 신규	창고	-	155	▲155	-	96.69	-	96.69	-	2	-	1
	8 기정	취사장	61	61	변경없음	36.00	36.00	36.00	36.00	1	1	1	1
	9 기정	중앙광장	5,123	5,123	변경없음	-	-	-	-	-	-	-	-
숙박 시설	소 계		4,888	3,662	▼1,226	250.00	175.00	250.00	175.00	10	7	-	-
	10 변경	산장	2,746	1,520	▼1,226	250.00	175.00	250.00	175.00	10	7	1	1
	11 기정	야영장	2,142	2,142	변경없음	-	-	-	-	-	-	-	-
운동 오락 시설	소 계		2,205	1,640	▼565	-	-	-	-	-	-	-	-
	12 변경	체력단련장	589	390	▼199	-	-	-	-	-	-	-	-
	13 변경	모험놀이시설	1,616	1,250	▼366	-	-	-	-	-	-	-	-
휴양 문화 시설	소 계		60,741	70,746	▲10,005	1,999.33	2,973.32	3,130.96	3,742.95	35	26	-	-
	14 기정	박물관	8,015	8,015	변경없음	632.12	632.12	632.12	632.12	11	11	1	1
	15 기정	왕인로	2,657	2,657	변경없음	-	-	-	-	-	-	-	-
	16 기정	연지	1,296	1,296	변경없음	-	-	-	-	-	-	-	-
	17 기정	왕인묘역	1,188	1,188	변경없음	-	-	-	-	-	-	-	-
	18 기정	전망대(망월정)	1,360	1,360	변경없음	193.21	193.21	204.84	204.84	1	1	2	2
	19 기정	청소년수련장	733	733	변경없음	230.00	230.00	230.00	230.00	1	1	1	1
	20 변경	비지터센터(영월관)	2,698	2,698	변경없음	480.00	485.25	1,200.00	1,243.25	1	1	2	2
	21 변경	왕인유적지	2,132	2,132	변경없음	55.00	73.06	55.00	73.06	1	1	1	1
	22 변경	왕인정(월악루)	96	96	변경없음	96.00	45.36	96.00	45.36	2	1	1	1
	23 변경	쉼터	971	370	▼601	25.00	25.00	425.00	25.00	17	1	1	1
	24 변경	문화열린마당	2,606	6,446	▲3,840	-	-	-	-	-	-	-	-
	25 변경	논어광장	3,992	6,804	▲2,812	-	70.38	-	70.38	-	1	-	1
	26 변경	야외무대	2,408	2,408	변경없음	288.00	252.00	288.00	252.00	1	1	1	1
	27 변경	야외학습장	5,419	1,070	▼4,349	-	-	-	-	-	-	-	-
	28 변경	천연잔디	25,170	24,583	▼587	-	-	-	-	-	-	-	-
	29 신규	제실	-	100	▲100	-	40.50	-	40.50	-	1	-	1
	30 신규	유적비(최지몽유적비)	-	90	▲90	-	-	-	-	-	-	-	-
	31 신규	왕인수석전시관	-	7,178	▲7,178	-	628.00	-	628.00	-	3	-	1
	32 신규	한옥음식체험관	-	1,522	▲1,522	-	298.44	-	298.44	-	3	-	1
상가 시설	소 계		1,435	1,435	변경없음	300.00	300.00	300.00	300.00	4	4	-	-
	33 기정	음식점	1,435	1,435	변경없음	300.00	300.00	300.00	300.00	4	4	1	1
녹 지			122,744	117,129	▼5,615	-	-	-	-	-	-	-	-

□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지형도면고시 승인 조서

1.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20,386	-	220,386	100.0	
계획관리지역	220,386	-	220,386	100.0	

2. 용도지구 변경(결정) 조서 : (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제한내용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	⑥	성기동 지구	개발 진흥 지구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23-5번지 일원	· 건폐율 : 60%이하 · 용적률 : 150%이하 · 층 수 : 3층 이하	220,386	1999.4.8	

□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지형도면고시 승인 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도면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⑥	성기동지구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23-5번지 일원	220,386	-	220,386	

2.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세분된 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	주 요 도 입 시 설
	기정	변경	증감		
합 계	220,386	220,386	-	100.00	세부시설 : 기정 28개 → 변경 33개
공공·편의 시설용지	28,373	25,774	감2,599	11.70	○기정 : 유적관리사무소, 주차관리사무소, 도로, 화장실, 주차장, 취사장, 중앙광장 등
					○신규 : 창고, 매표소
					○변경 : 유적관리사무소, 소매점 및 화장실, 도로, 화장실, 주차장
숙박시설 용지	4,888	3,662	감1,226	1.66	산장, 야영장
운동·오락 시설용지	2,205	1,640	감565	0.74	체력단련장, 모험놀이시설
휴양·문화 시설용지	60,741	70,746	증10,005	32.10	○기정 : 청소년수련장, 문화열린마당, 논어광장, 왕인유적지, 전망대, 박물관, 쉼터, 비지터센터, 야외무대, 왕인로, 연지, 왕인정, 왕인묘역, 야외학습장, 천연잔디
					○신규 : 제실, 유적비, 왕인수석전시관, 한옥음식체험관
					○변경 : 비지터센터, 왕인유적지, 왕인정, 쉼터, 문화열린마당, 논어광장, 야외학습장, 천연잔디, 야외무대
상가 시설용지	1,435	1,435	-	0.65	음식점
기타 시설용지	122,744	117,129	감5,615	53.15	녹 지

나. 세부 시설배치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 분		토지이용면적(㎡)			시 설 규 모							
		기정	변경	증감	건축면적(㎡)		연면적(㎡)		동수		층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220,386	220,386	변경없음	3,178.33	4,106.95	4,309.96	4,876.58	58	49	-	-
시설 합계		97,642	103,257	▲5,615	3,178.33	4,106.95	4,309.96	4,876.58	58	49	-	-
공공 편의 시설	소 계	28,373	25,774	▼2,599	629.00	658.63	629.00	658.63	9	12	-	-
	1 변경 유적관리사무소	828	1,363	▲535	247.00	210.08	247.00	210.08	1	2	1	1
	2 변경 주차관리사무소	113	-	▲68	90.00	-	90.00	-	1	-	1	-
	소매점맞화장실	-	181		-	95.20	-	95.20	-	1	-	1
	3 변경 도로	10,496	8,456	▼2,040	-	-	-	-	-	-	-	-
	4 변경 화장실	440	630	▲190	256.00	211.72	256.00	211.72	6	5	1	1
	5 변경 주차장	11,312	9,790	▼1,522	-	-	-	-	-	-	-	-
	6 신규 매표소	-	15	▲15	-	8.94	-	8.94	-	1	-	1
	7 신규 창고	-	155	▲155	-	96.69	-	96.69	-	2	-	1
숙박 시설	8 기정 취사장	61	61	변경없음	36.00	36.00	36.00	36.00	1	1	1	1
	9 기정 중앙광장	5,123	5,123	변경없음	-	-	-	-	-	-	-	-
	소 계	4,888	3,662	▼1,226	250.00	175.00	250.00	175.00	10	7	-	-
운동 오락 시설	10 변경 산장	2,746	1,520	▼1,226	250.00	175.00	250.00	175.00	10	7	1	1
	11 기정 야영장	2,142	2,142	변경없음	-	-	-	-	-	-	-	-
휴양 문화 시설	소 계	2,205	1,640	▼565	-	-	-	-	-	-	-	-
	12 변경 체력단련장	589	390	▼199	-	-	-	-	-	-	-	-
상가 시설	13 변경 모험놀이시설	1,616	1,250	▼366	-	-	-	-	-	-	-	-
	소 계	60,741	70,746	▲10,005	1,999.33	2,973.32	3,130.96	3,742.95	35	26	-	-
	14 기정 박물관	8,015	8,015	변경없음	632.12	632.12	632.12	632.12	11	11	1	1
	15 기정 왕인로	2,657	2,657	변경없음	-	-	-	-	-	-	-	-
	16 기정 연지	1,296	1,296	변경없음	-	-	-	-	-	-	-	-
	17 기정 왕인묘역	1,188	1,188	변경없음	-	-	-	-	-	-	-	-
	18 기정 전당대(망월정)	1,360	1,360	변경없음	193.21	193.21	204.84	204.84	1	1	2	2
	19 기정 청소년수련장	733	733	변경없음	230.00	230.00	230.00	230.00	1	1	1	1
	20 변경 비지터센터(영월관)	2,698	2,698	변경없음	480.00	485.25	1,200.00	1,243.25	1	1	2	2
	21 변경 왕인유적지	2,132	2,132	변경없음	55.00	73.06	55.00	73.06	1	1	1	1
	22 변경 왕인정(월악루)	96	96	변경없음	96.00	45.36	96.00	45.36	2	1	1	1
	23 변경 쉼터	971	370	▼601	25.00	25.00	425.00	25.00	17	1	1	1
	24 변경 문화열린마당	2,606	6,446	▲3,840	-	-	-	-	-	-	-	-
	25 변경 논어광장	3,992	6,804	▲2,812	-	70.38	-	70.38	-	1	-	1
	26 변경 야외무대	2,408	2,408	변경없음	288.00	252.00	288.00	252.00	1	1	1	1
	27 변경 야외학습장	5,419	1,070	▼4,349	-	-	-	-	-	-	-	-
	28 변경 천연잔디	25,170	24,583	▼587	-	-	-	-	-	-	-	-
	29 신규 제실	-	100	▲100	-	40.50	-	40.50	-	1	-	1
	30 신규 유적비(최지몽유적비)	-	90	▲90	-	-	-	-	-	-	-	-
	31 신규 왕인수석전시관	-	7,178	▲7,178	-	628.00	-	628.00	-	3	-	1
	32 신규 한옥음식체험관	-	1,522	▲1,522	-	298.44	-	298.44	-	3	-	1
녹 지	소 계	1,435	1,435	변경없음	300.00	300.00	300.00	300.00	4	4	-	-
	33 기정 음식점	1,435	1,435	변경없음	300.00	300.00	300.00	300.00	4	4	1	1
총 계		122,744	117,129	▼5,615	-	-	-	-	-	-	-	-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해당없음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숙박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4,888	-	4,888	
	변경	-	3,662	-	3,662	
A	기정	A-1	2,142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60-2번지 일원	2,142	야영장
	기정	A-2	2,746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60-2번지 일원	2,746	산장
	변경	A-2	1,52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60-2번지 일원	1,520	

나. 공공편의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17,877	-	17,877	
	변경	-	17,318	-	17,318	
B	기정	B-1	11,312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11,312	주차장
	변경	B-1	9,79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9,790	
	기정	B-2	5,123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5,123	중앙광장
	신설	B-3	155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4-2번지 일원	155	관리창고
	기정	B-3	828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828	유적관리사무소
	변경	B-4	1,363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8번지 일원	1,363	
	기정	B-4	614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614	매표소, 화장실, 취사장, 소매점
	변경	B-5	887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887	

다. 운동오락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기정	-	2,205	-	2,205	
	변경	-	1,640	-	1,640	
C	기정	C-1	589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60-2번지 일원	589	체력단력장
	변경	C-1	39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60-2번지 일원	390	
	기정	C-2	1,616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4-2번지 일원	1,616	모험놀이시설
	변경	C-2	1,25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4-2번지 일원	1,250	

라. 휴양문화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계	기정	-	60,741	-	60,741	
	변경	-	70,746	-	70,746	
D	기정	D-1	41,903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41,903	비지터센터, 천연잔디, 왕인수석전시관 등 휴양문화시설
	변경	D-1	43,634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43,634	
	기정	D-2	3,992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40-7번지 일원	3,992	논어광장
	변경	D-2	6,804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40-7번지 일원	6,804	
	기정	D-3	2,132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3-2번지 일원	2,132	왕인유적지
	기정	D-4	2,606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4-9번지 일원	2,606	문화열린마당
	변경	D-4	6,446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4-9번지 일원	6,446	
	기정	D-5	733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60-2번지 일원	733	청소년수련장
	기정	D-6	1,36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8-4번지 일원	1,360	전망대
	기정	D-7	8,015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23-5번지 일원	8,015	박물관
	신설	D-8	1,522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37번지 일원	1,522	한옥음식체험관
	신설	D-9	100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18번지 일원	100	제실

마. 녹지용지(변경)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 (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계	기정	-	122,744	-	122,744	
	변경	-	117,129	-	117,129	
E	기정	-	122,744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8번지 일원	122,744	녹지
	변경	-	117,129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산8번지 일원	117,129	

바. 상가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번호 (획지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계	-	-	1,435	-	1,435	-
F	-	-	1,435	영암군 군서면 동구림리 423-4번지 일원	1,435	음식점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획지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A	A (숙박시설)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용적률	60%이하 / •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 경사형 지붕형태 계획
		색 채	- 벽체 : 무채색 N계열 - 지붕 : 먼셀색표계의 YG계열
		건축선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B	B (공공편의 시설)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가목의 일용품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용적률	60%이하 / •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 경사형 지붕형태 계획
		색 채	- 벽체 : 무채색 N계열 - 지붕 : 먼셀색표계의 YG계열
		건축선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D	D (휴양문화 시설)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제2종 근생시설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용적률	60%이하 / •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 경사형 지붕형태 계획
		색 채	- 벽체 : 무채색 N계열 - 지붕 : 먼셀색표계의 YG계열
		건축선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F	F (음식점)	용 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일용품등을 판매하는 소매점, 나목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자목 일반음식점, 하목 금융업소, 사무소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용적률	60%이하 / • 150%이하
		높 이	3층이하
		배 치	도면참조
		형 태	지붕 : 경사형 지붕형태 계획
		색 채	- 벽체 : 무채색 N계열 - 지붕 : 먼셀색표계의 YG계열
		건축선	건축한계선 : 획지경계선과 동일하게 지정

무안군 공고 제2015-685호

무안 군계획시설(경관녹지9)사업 공사완료 공고

무안군 고시 제2015-70호(2015.6.18.)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무안 군계획시설(경관녹지9)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2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 10. 29

무안군수

1. 사업시행지 위치 :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2204번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군계획시설(경관녹지9)사업
 - 명 칭 : 남악신도시 중앙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3. 사업면적 또는 규모
 - 면 적 : 35,662.4㎡ 중 26,091.8㎡
 - 규 모 : 공중화장실 1식 (지상1층, 95.75㎡)
 - ※ 국토계획법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에 따른 부분 시행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무안군수
 - 주 소 : 전라남도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15.12.31.
6. 준공일자 : 2015.09.18.
7. 관계서류는 무안군청 지역개발과(061-450-5768) 및 남악신도시개발사업소(061-450-4162)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함평군 고시 제2015-78호

함평 군관리계획(유원지) 실시계획 변경 고시

함평 군관리계획(유원지) 실시계획 변경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2015. 10. 29

함평군수

1. 실시계획 변경 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사업시행지의 위치	■ 함평군 함평읍 내교리 830-1번지 일원	좌 동	변경없음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군계획시설(유원지-세부시설) ■ 명칭 : 2008 함평세계나바곤충엑스포 기반조성사업에 따른 유원지 조성사업	좌 동	변경없음
면적 또는 규모	■ 면적 : 272,912.2㎡ ■ 규모 : 유원지 조성계획	좌 동	세부시설 변 경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함평군수 ■ 주소 :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200	좌 동	변경없음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2007. 01. 10. ■ 준공예정일 : 2012. 02. 29.	■ 착수예정일 : 좌 동 ■ 준공예정일 : 2016. 10. 31.	

※ 세부시설 변경 내역 및 사유 : 다음조서

2. 관계도서는 함평군청 전략경영과(061.320.3709)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세부시설 변경 내역 및 사유

○ 유원지 세부시설 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m ²)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1-1	전시관 1	내교리 830-1	7,84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변경	1-2	전시관 2	수호리 1152-1	6,82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변경	1-3	전시관 3	내교리 844-1	2,840	함평군 고시 제2008-121호 (2008.04.21)	
기정	1-4	전시관 4	수호리 1153-1	5,3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1-5	전시관 5	수호리 1154-1	7,07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1-6	전시관 6	수호리 1157-1	13,00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변경	1-6	전시관 6	수호리 1157-1	11,000		
기정	2-1	함평나비랜드	수호리 1154-4	7,06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2-2	물놀이 시설	수호리 1157-1	4,71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신설	2-3	엑스포랜드	수호리 1157-1	1,700	-	
기정	3-1	식당 및 식음시설	수호리 1152-1	720	함평군 고시 제2010-4호 (2010.01.21)	
기정	3-2	특산물 전시판매장	내교리 828-2	180	함평군 고시 제2010-4호 (2010.01.21)	
기정	3-3	매 점	수호리 1154-1	60	함평군 고시 제2010-4호 (2010.01.21)	
신설	3-4	매점, 휴게음식점	수호리 1157-1	300	-	
기정	4-1	주차장 1	내교리 828-8	26,79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4-2	주차장 2	수호리 1153-1	5,880	함평군 고시 제2008-121호 (2008.04.21)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세부시설명	위 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5	운영관	내교리 830-1	5,38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6-1	광 장 1	내교리 845-1	30,90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6-2	광 장 2	수호리 1154-1	4,01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6-3	광 장 3	수호리 1152-1	320	함평군 고시 제2010-4호 (2010.01.21)	
기정	7	도 로	내교리 830-1	27,11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8	수 로	수호리 1153-1	25,9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9-1	화장실 1	내교리 828-8	9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기정	9-2	화장실 2	내교리 830-1	390	함평군 고시 제2008-121호 (2008.04.21)	
기정	9-3	화장실 3	수호리 1155-2	120	함평군 고시 제2008-121호 (2008.04.21)	
기정	10	매표소	내교리 835-1	120	함평군 고시 제2008-121호 (2008.04.21)	
기정	11	종합안내소	내교리 828-8	70	함평군 고시 제2010-4호 (2010.01.21)	
기정	12	저류지	내교리 828-8	4,810	함평군 고시 제2008-121호 (2008.04.21)	
기정	13	녹 지	수호리 1152-1	85,362.2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6-20호 (2006.06.27)	

○ 변경 사유

유원지의 활성화 및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특수시설 일부(2,000㎡)를 유희시설 및 편의시설로 변경

영광군 고시 제2015-125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시행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제9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및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5. 10. 29

영광군수

1.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 : 전라남도 영광군 홍농읍 계마리, 성산리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 한빛본부 발전소 협력사 식당 및 REMC 차고 증축

다. 사업(부지) 면적 : 3,743,017㎡

○ 건축면적 : (당초) 202,742.118㎡ → (변경) 203,474.348㎡(증. 732.16㎡)

- 한빛본부 REMC 차고 증축공사 : 23.68㎡(지상1층)

- 한빛 제1발전소 협력사 식당 신축공사 : 240㎡(지상1층)

- 한빛 제2발전소 협력사 식당 신축공사 : 267.81㎡(지상1층 39.33㎡, 지상2층 228.48㎡)

- 한빛 제3발전소 협력사 식당 신축공사 : 240㎡(지상1층)

라. 변경인가내용(변경) : 세부내역 붙임

마.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125 한국수력원자력(주) 사장 조 석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변경인가일로부터

○ 준공예정일 : 2017. 10. 31.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 게재생략

3.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건설도시과(☎061-350-49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실시계획인가 설치계획

연번	시설명	건축면적(㎡)			연면적(㎡)			비고
		당초	변경	증감	당초	변경	증감	
계	당초232개 → 변경:236개	202,742.188	203,474.348	732.16	518,610.048	519,381.538	771.49	
1	제1호 (주정문경비실)	794.11	794.11		904.07	904.07		
2	제2호 (창고시설)	84.18	84.18		84.18	84.18		
3	제3호 (온배수이용양식장)부속면적포함	3,238.61	3,238.61		3,021.66	3,021.66		
4	제4호 (해안초소)	79.66	79.66		79.66	79.66		
5	제5호 (부대건물내무반)	46.00	46.00		46.00	46.00		
6	청경사택수위실	0.00	0.00		0.00	0.00		
7	청경아파트 1동	0.00	0.00		0.00	0.00		
8	청경아파트 2동	0.00	0.00		0.00	0.00		
9	청경아파트 3동	0.00	0.00		0.00	0.00		
10	청경아파트 5동	0.00	0.00		0.00	0.00		
11	청경아파트 6동	0.00	0.00		0.00	0.00		
12	청경아파트 7동	0.00	0.00		0.00	0.00		
13	제1호 (방사성폐기물저장소)	1,773.80	1,773.80		1,969.80	1,969.80		
14	제2호 (방사성폐기물저장소)	2,114.50	2,114.50		2,156.10	2,156.10		
15	제1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6	제2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7	제3호 (정수장관리실)	66.00	66.00		66.00	66.00		
18	제4호 (정수장)	60.27	60.27		60.27	60.27		
19	제5호 (정수장)	36.26	36.26		72.52	72.52		
20	제1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21	제2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22	제3호 (망루초소)	30.38	30.38		21.53	21.53		
23	제4호 (망루초소)	30.38	30.38		21.53	21.53		
24	제1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25	제2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26	제2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27	제1호 (#1, 폐수처리설비용)	449.30	449.30		772.80	772.80		
28	제2호 (창고)	86.64	86.64		150.48	150.48		

29	제3호 (해경경비막사)	133.02	133.02		133.02	133.02		
30	제1호 (기상관측소)	102.55	102.55		102.55	102.55		
31	제2호 (전동기정비소)	880.00	880.00		1,043.50	1,043.50		
32	제3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33	제4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34	제1호 (윤활유저장창고)	0.00	0.00		0.00	0.00		
35	제2호 (근린공공시설A)	996.25	996.25		2,038.56	2,038.56		
36	제3호(근린공공시설B)업무시설	784.05	784.05		2,314.02	2,314.02		
37	제4호 (기계공작실#1,2)	1,146.60	1,146.60		1,223.04	1,223.04		
38	제5호 (#1 차고)	92.00	92.00		92.00	92.00		
39	제6호 (#1 발전소통로)	18.88	18.88		18.88	18.88		
40	제7호 (#1 변전운전실)	360.00	360.00		511.20	511.20		
41	제8호 (제1발 사무실)	1,080.00	1,080.00		3,185.30	3,185.30		
42	제9호 (#1 염소주입실)	371.61	371.61		371.61	371.61		
43	제10호 (#1 ,2 경비실)	325.20	325.20		261.00	261.00		
44	제11호 (#1 염소주입실)	561.20	561.20		561.20	561.20		
45	제12호 (산업폐기물저장소)	0.00	0.00		0.00	0.00		
46	제13호 (#1 원자로차폐외)	22,476.95	22,476.95		60,986.65	60,986.65		
47	제14호 (#2 원자로차폐외)	15,795.91	15,795.91		45,367.99	45,367.99		
48	제15호 (#2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49	제16호 (#2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50	제17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51	제18호 (1발 장비창고)	160.00	160.00		160.00	160.00		
52	제1호 (유지창고외3동), 가스저장고, 망루초소, 망루초소	705.6	705.6		713.00	713.00		
53	제2호 (#3,4 물처리실)	1,094.00	1,094.00		1,193.00	1,193.00		
54	제3호 (#3,4 폐기물처리장)	1,941.00	1,941.00		9,917.50	9,917.50		
55	제4호 (#3 가스저장실)	154.00	154.00		154.00	154.00		
56	제5호 (#3,4 보조보일러)	1,076.00	1,076.00		1,305.00	1,305.00		
57	제6호 (#3,4 기계공작실)	1,242.00	1,242.00		1,890.00	1,890.00		
58	제7호 (#3 발전소 주기기건물)	14,347.00	14,347.00		59,021.00	59,021.00		
59	제8호 (#4 발전소 주기기건물)	14,347.00	14,347.00		59,021.00	59,021.00		

60	제9호 (#3,4 대체교류발전)	817.90	817.90		2,607.80	2,607.80		
61	제10호 (#3 열교환기A)	476.00	476.00		952.00	952.00		
62	제11호 (#3 1차해수취수)	222.00	222.00		407.00	407.00		
63	제12호 (#3 순환수 취수실 및 펌프실)	1,015.00	1,015.00		1,376.00	1,376.00		
64	제13호 (#4 염소주입실)	979.00	979.00		979.00	979.00		
65	제14호 (#3,4 케이בל실)	542.00	542.00		1,084.00	1,084.00		
66	제15호 (#3 열교환기B)	476.00	476.00		952.00	952.00		
67	제16호 (#4 1차냉각해수펌프)	222.00	222.00		407.00	407.00		
68	제17호 (#4 순환수 및 펌프실)	1,015.00	1,015.00		1,376.00	1,376.00		
69	제18호 (#3,4 경비실)	458.475	458.475		458.475	458.475		
70	제19호 (#3 공구창고)	20.00	20.00		20.00	20.00		
71	제20호 (#4 공구창고)	20.00	20.00		20.00	20.00		
72	제21호 (#3 기타창고시설)	506.00	506.00		506.00	506.00		
73	제22호 (2발 장비창고)	80.00	80.00		80.00	80.00		
74	제1호 (#5,6발전사무실)	1,271.94	1,271.94		6,119.08	6,119.08		
	제1호 (한빛3발 운영사무실)	0.00	0.00		196.00	196.00		
75	제2호 (#5,6염소주입건물)	1,861.51	1,861.51		1,976.72	1,976.72		
76	제3호 (#5,6스위치야드건물)	458.24	458.24		916.48	916.48		
77	제4호 (#5,6 폐수처리건물)	610.29	610.29		1,028.00	1,028.00		
78	제5호 (#5,6 기계공작실)	1,632.00	1,632.00		3,090.14	3,090.14		
79	제6호 (#5,6 가스저장고)	48.00	48.00		48.00	48.00		
80	제7호 (#5,6 자재창고)	1,980.00	1,980.00		1,980.00	1,980.00		
81	제8호 (#5,6 자재창고)	1,350.00	1,350.00		1,350.00	1,350.00		
82	제9호(#5 원자로 및 발전설비)	15,577.25	15,577.25		65,134.25	65,134.25		
83	제10호 (물처리실)	1,566.34	1,566.34		1,923.66	1,923.66		
84	제11호(#5,6 폐기물처리 및 저장)	2,317.00	2,317.00		10,042.00	10,042.00		
85	제12호 (#5 열교환기)	739.00	739.00		1,478.00	1,478.00		
86	제13호 (#5냉각해수펌프)	224.00	224.00		470.00	470.00		
87	제14호 (#5 순환수 및 펌프실)	1,210.00	1,210.00		1,650.00	1,650.00		
88	제15호 (#5 연료저장실)	1,140.00	1,140.00		2,940.00	2,940.00		
89	제16호 (#5 가스저장실)	234.00	234.00		234.00	234.00		

90	제17호 (경비실)	563.90	563.90		563.90	563.90		
91	제18호 (망루초소)	4.84	4.84		8.52	8.52		
92	제19호 (망루초소)	4.84	4.84		8.52	8.52		
93	제20호 (경비초소)	8.75	8.75		8.75	8.75		
94	제21호 (경비초소)	8.75	8.75		8.75	8.75		
95	제22호(#6 원자로 및 발전설비)	15,585.61	15,585.61		65,820.90	65,820.90		
96	제23호 (#6 열교환기실)	739.00	739.00		1,559.54	1,559.54		
97	제24호 (#6 냉각해수펌프)	224.00	224.00		470.00	470.00		
98	제25호 (#6 순환수 및 펌프실)	1,210.00	1,210.00		1,650.00	1,650.00		
99	제26호 (#6 연료저장실)	1,240.44	1,240.44		3,302.64	3,302.64		
100	제1호 (이용실)	0.00	0.00		0.00	0.00		
101	제2호 (본관사무실)	4,209.09	4,209.09		10,415.39	10,415.39		
102	제3호 (무기고)	111.35	111.35		111.35	111.35		
103	제4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04	제5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05	제6호 (건설사무실)	894.00	894.00		1,860.00	1,860.00		
106	제7호 (영구창고)	1,924.56	1,924.56		1,924.56	1,924.56		
107	제8호 (모델전시실)	660.00	660.00		660.00	660.00		
108	제9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09	제10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0	제11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1	제12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2	제13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3	제14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4	제15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5	제16호 (자재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16	제17호(화장실 및 동물사육장)	29.05	29.05		29.05	29.05		
117	전시관 및 화장실	1,275.03	1,275.03		2,269.50	2,269.50		
118	제가동호 (연수원)	1,987.28	1,987.28		3,153.60	3,153.60		
119	제1호 (유지창고)	660.00	660.00		660.00	660.00		
120	제2호 (목공장)	0.00	0.00		0.00	0.00		
121	제1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22	제1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23	제2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24	제3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25	제4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26	제5호 (#2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27	근린생활시설	176.00	176.00		176.00	176.00		
128	제1호 (경비초소)	4.80	4.80		8.50	8.50		
129	제2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30	제3호 (창고)	250.00	250.00		250.00	250.00		
131	제2호 (망루초소)	4.80	4.80		8.50	8.50		
132	제1호 (대응전)	33.06	33.06		33.06	33.06		
133	제2호 (수도원)	16.53	16.53		16.53	16.53		
134	제3호 (수도원주택)	127.02	127.02		127.02	127.02		
135	제1호 (중기수리공장)	1,071.00	1,071.00		1,071.00	1,071.00		
136	제2호 (환경미화창고)	369.00	369.00		369.00	369.00		
137	제3호 (쓰레기처리시설)	319.00	319.00		319.00	319.00		
138	제1호 (부대건물내무반)	46.00	46.00		46.00	46.00		
139	제2호 (해안초소)	79.66	79.66		79.66	79.66		
140	제19호 (제1발사무실)	1,917.23	1,917.23		4,840.77	4,840.77		
141	제6호 (화장실)	159.52	159.52		159.52	159.52		
142	제7호 (망루초소)	4.84	4.84		8.55	8.55		
143	협력업체사무실	1,282.74	1,282.74		4,292.74	4,292.74		
144	제5호 (종합정비공작실)	2,449.48	2,449.48		3,380.85	3,380.85		
145	영광본부 사무실 (기존일련번호101 면적포함됨)	0.00	0.00		0.00	0.00		
146	제9호 (취수구정비실)	333.00	333.00		330.00	330.00		
147	제10호(5,6호기지계차보관창고)	204.00	204.00		204.00	204.00		
148	제6호 (옥외전기실)	191.45	191.45		191.52	191.52		
149	영광 전동기시험실(기존일련번호31면적포함)	0.00	0.00		0.00	0.00		
150	제나동호 (교육훈련센터)	1,861.73	1,861.73		1,853.34	1,853.34		
151	제4호 (홍보전망대)	84.11	84.11		84.11	84.11		

152	제22호 (변압기정비실)	60.00	60.00		60.00	60.00		
153	제23호 (변압기정비실)	60.00	60.00		60.00	60.00		
154	제23호 (2,3발 직통문)	48.40	48.40		42.00	42.00		
155	영광 1호기 격납건물 반입구조물	98.80	98.80		0.00	0.00		
156	영광 2호기 격납건물 반입구조물	98.80	98.80		0.00	0.00		
157	제25호 (정밀기기정비실)	968.50	968.50		1,861.50	1,861.50		
158	제24호 (취수구정비실)	333.00	333.00		330.00	330.00		
159	제27호 (유류저장고)	228.00	228.00		228.00	228.00		
160	제28호 (가스저장창고)	51.30	51.30		51.30	51.30		
161	영광 A/O 운전원사무실	0.00	0.00		0.00	0.00		
162	영광 정비용 자재창고	0.00	0.00		0.00	0.00		
163	제7호 (사무실,작업장,창고)	486.08	486.08		562.08	562.08		
164	제7호 (지정폐기물 보관동)	432.00	432.00		432.00	432.00		
165	제7호 생활폐기물 보관장	861.00	861.00		0.00	0.00		
166	제7호 (부산물 보관장)	220.80	220.80		220.80	220.80		
167	제29호 (ACC D/G)	216.88	216.88		203.70	203.70		
168	영광 3호기 반입구조물	176.00	176.00		0.00	0.00		
169	영광 4호기 반입구조물	176.00	176.00		0.00	0.00		
170	제10호(5,6호기 정비물자 보관창고)	551.00	551.00		551.00	551.00		
171	제11호6호기취수구정비지원실	100.00	100.00		100.00	100.00		
172	제8호 (한마음공원 화장실)	59.90	59.90		59.90	59.90		
173	영광 한마음공원 봉수대	81.87	81.87		0.00	0.00		
174	영광 후문경비실	0.00	0.00		0.00	0.00		
175	제9호 (변전소 A)	192.00	192.00		192.00	192.00		
176	제8호(태양광발전소B지역-변전소)	192.00	192.00		192.00	192.00		
177	제9호 (폐유저장창고)	495.00	495.00		495.00	495.00		
178	영광 중성미자 검출설비 터널 (시설)	0.00	0.00		0.00	0.00		
179	영광 3,4호기 취수구정비실	1,157.00	1,157.00		1,718.88	1,718.88		
180	영광 5,6호기 발전사무실(기존 일련번호 74 면적포함됨)	0.00	0.00		0.00	0.00		
181	제2호본관 사무실 (기존 일련번호 101 면적포함됨)	0.00	0.00		0.00	0.00		

182	영광본부 제1,2발전소 통합자재창고	7,344.14	7,344.14		7,257.94	7,257.94		
183	제10호 (한마음공원 유리온실)	636.95	636.95		607.99	607.99		
184	제3호 제1발전소 한전KPS사무실증축 (일련번호36 면적에 포함됨)	0.00	0.00		0.00	0.00		
185	제12호(통합하수처리시설)	425.01	425.01		876.21	876.21		
186	축구장 본부석	50.00	50.00		0.00	0.00		
187	제3호 온배수양식장 방풍실 (제3호면적포함)	0.00	0.00		0.00	0.00		
188	본관 사무실 연결통로 (기존일련번호101 면적포함됨)	0.00	0.00		0.00	0.00		
189	제10호 (소포시설 보호시설)	129.00	129.00		129.00	129.00		
190	제2호 (경비초소)	16.29	16.29		13.60	13.60		
191	제2호 (망루초소)	10.89	10.89		21.53	21.53		
192	제1호 (후문 경비실)	116.56	116.56		103.00	103.00		
193	제11호 (해양환경실험실)	270.26	270.26		270.26	270.26		
194	영광1발 정비용 보조물질 보관창고	0.00	0.00		0.00	0.00		
195	5호기 MST 취급크레인 건물	360.00	360.00		0.00	0.00		
196	6호기 MST 취급크레인 건물	360.00	360.00		0.00	0.00		
197	에너지 아쿠아리움 복지건물 (기존일련번호3 면적 포함됨)	0.00	0.00		0.00	0.00		
198	제12호(5,6호기 종합정비창고)	1,500.00	1,500.00		1,633.40	1,633.40		
199	제19호 (자재야적장)	390.80	390.80		390.80	390.80		
200	제25호(3호기 전력용 변압기 정비실)	65.25	65.25		63.00	63.00		
201	제26호(4호기 전력용 변압기 정비실)	65.25	65.25		63.00	63.00		
202	5호기 전력용 변압기 정비실	98.00	98.00		140.00	140.00		
203	6호기 전력용 변압기 정비실	98.00	98.00		140.00	140.00		
204	제3호 양식장 냉동창고 (제3호 면적 포함)	0.00	0.00		0.00	0.00		
205	제13호(태양광 발전시설 건물)	761.60	761.60		919.11	919.11		
206	주11동 (공도장)	245.36	245.36		201.75	201.75		
207	제6호(345kV영광NP 한류리액터 1호기 제어동 건물) 제1종근린생활시설	179.69	179.69		179.69	179.69		

208	제3호(345kV영광N/P 한류리액터 2호기 제어동)변전소	179.69	179.69		179.69	179.69		
209	영광본부 방호증원부대 막사	453.52	453.52		828.12	828.12		
210	제14호(망루)	148.60	148.60		177.72	177.72		
211	망루	13.60	13.60		13.60	13.60		
212	제1호 (망루초소)	10.89	10.89		21.53	21.53		
213	제1호(폐수처리장 오니저장창고)	0.00	0.00		0.00	0.00		
214	영광1발 현장정비실	0.00	0.00		0.00	0.00		
215	영광본부해양방재설비 종합창고	0.00	0.00		0.00	0.00		
216	제20호 (1호기 밸브 정비실)	50.00	50.00		50.00	50.00		
217	제21호 (2호기 밸브 정비실)	50.00	50.00		50.00	50.00		
218	제33호 (AAC D/G 보조연료탱크저장)	76.86	76.86		76.86	76.86		
219	본관사무실 연결 복도 (기존일련번호101 면적포함 됨)	0.00	0.00		0.00	0.00		
220	345kV영광연락#1,2T/L No.2	267.00	267.00		0.00	0.00		
221	345kV영광연락#1,2T/L No.3	381.00	381.00		0.00	0.00		
222	345kV영광연락#3,4T/L No.2	441.00	441.00		0.00	0.00		
223	345kV영광연락#3,4T/L 관형철탑 2기	200.00	200.00		0.00	0.00		
224	제4호(이동형발전차량보관창고)	494.40	494.40		494.40	494.40		
225	제3호 (운반용기 적재창고)	294.99	294.99		294.99	294.99		
226	한빛본부 청경대 종합관리 (기존일련번호1 면적 포함됨)	0.00	0.00		0.00	0.00		
227	한빛본부 본관사옥 (기존일련번호101 면적포함됨)	0.00	0.00		0.00	0.00		
228	제31호(1호기터빈현장운전원사무실)	110.00	110.00		220.00	220.00		
229	제32호(2호기터빈현장운전원사무실)	110.00	110.00		220.00	220.00		
230	한빛 5,6호기 모의제어반 신축	1,324.82	1,324.82		1,550.59	1,550.59		
231	한빛 3,4호기 임시저장고 신축	1,715.00	1,715.00		1,904.00	1,904.00		
232	제34호(한빛1발 정비용품 보관창고)	798.00	798.00		1,495.10	1,495.10		
233	한빛본부 REMC 차고	-	23.68	23.68	-	23.68	23.68	증축
234	한빛본부 1발전소 협력사 식당	-	240.00	240.00	-	240.00	240.00	신축
235	한빛본부 2발전소 협력사 식당	-	228.48	228.48	-	228.48	228.48	신축
236	한빛본부 3발전소 협력사 식당	-	240.00	240.00	-	240.00	240.00	신축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리			공부상	편입면적	성명	주소	권리구분	성명	주소	
1	홍농	계마	953	장	168,507.3	168,507.3	한수원(주)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2	홍농	계마	961	도	234.8	234.8	〃	〃				
3	홍농	계마	962	도	275.3	275.3	〃	〃				
4	홍농	계마	966	장	421,163.7	421,163.7	〃	〃				
5	홍농	계마	968	장	245,113.2	245,113.2	〃	〃				
6	홍농	계마	970	장	6,735.9	6,735.9	〃	〃				
7	홍농	계마	971	장	62,765.0	62,765.0	〃	〃				
8	홍농	계마	972	장	176,710.0	176,710.0	〃	〃				
9	홍농	계마	973	장	169,989.2	169,989.2	〃	〃				
10	홍농	계마	974	장	217,749.5	217,749.5	〃	〃				
11	홍농	계마	986	장	34,265.4	34,265.4	〃	〃				
12	홍농	계마	987	장	1,783.3	1,783.3	〃	〃				
13	홍농	계마	993	장	7,432.6	7,432.6	〃	〃				
14	홍농	계마	994	장	12,788.3	12,788.3	〃	〃				
15	홍농	계마	995	장	441.0	441.0	〃	〃				
16	홍농	계마	997	임	38,105.1	38,105.1	〃	〃				
17	홍농	계마	999	장	186.0	186.0	〃	〃				
18	홍농	계마	1000	임	11,159.6	11,159.6	〃	〃				
19	홍농	계마	1001	장	5,447.4	5,447.4	〃	〃				
20	홍농	계마	1012	도	1,137.2	1,137.2	〃	〃				
21	홍농	계마	1013	도	1,442.4	1,442.4	〃	〃				
22	홍농	계마	1014	도	256.2	256.2	〃	〃				
23	홍농	성산	383-2	잡	460.7	460.7	〃	〃				
24	홍농	성산	383-24	장	403.8	403.8	〃	〃				
25	홍농	성산	743	장	269,020.8	269,020.8	〃	〃				
26	홍농	성산	743-1	장	2,405.0	2,405.0	〃	〃				
	합계				1,855,978.7	1,855,978.7						

영광군 고시 제2015-126호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일원에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및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5. 10. 29

영광군수

1. 실시계획인가 신청의 요지

가. 사업시행지 :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879번지 외 9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

○ 종류 : 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 명칭 : 영광군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 시행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당초)215,356㎡ → (변경)214,969㎡(감. 387㎡)

○ 전기공급설비(발전시설) : 214,969㎡

○ 도로(소로3-322호선) : (당초)387㎡ → (변경) 0㎡(감. 387㎡)

라. 인가내용 : 세부내역 불입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6길 9 (주)광전사 대표 오형석

○ 영광군 군남면 봉덕로 1128-26 장가네태양광발전(주) 대표 오동석

○ 영광군 백수읍 지산길1길 61-37 (주)디에스솔라 대표 신순남

○ 영광군 영광읍 옥당로 140, 1층 (주)제이에스 영광솔라파크 대표 김연옥

○ 부산 남구 유엔로157번길 7 대한태양광발전(주) 대표 박근식

바.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없음)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 부터

○ 준공예정일 : 2015년 12월 31일

2.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소유권과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권리자의 성명·주소 : 다음

3. 관련설계도서 및 도면 : 게재생략

4. 관계도서는 영광군청 건설도시과(☎061-350-496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군계획시설 신청내용

시 설 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m ²)	최종결정일	용도지역	비고
전기공급설비	발전시설	영광군 백수읍 하사리 1879번지 외 9필지	214,969	2008.10.13.	계획관리지역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공부면적 (변경전) 변경후 (㎡)	편입면적 (변경전) 변경후 (㎡)	소유자		비 고
								성명	주소	
1	백수읍 하사리	1879			잡	(24,511) 24,511	(24,511) 24,511	신순님	영광군 백수읍 자산길1길 61-37	
2	〃	1879	-	1	잡	(24,969) 24,969	(24,969) 24,969	오동석 외 1	영광군 군남면 봉덕로 1128-26	
3	〃	1879	-	2	잡	(4,608) 4,608	(4,608) 4,608	오동석 외 1	영광군 군남면 봉덕로 1128-26	
4	〃	1072	-	46	잡	(66,031) 66,031	(66,031) 66,031	오형석 외 1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6길 9	
5	〃	1072	-	3	염	(89,732) 89,732	(89,732) 89,732	박근식 외 2	부산 남구 유엔로157번길 7	
6	〃	1072	-	47	구	(4,040) 4,040	(1,312) 1,312	국(건설부)		
7	〃	1072	-	48	제	(4,542) 4,542	(2,253) 2,253	국(건설부)		
8	〃	1072	-	2	제	(2,579) 2,579	(1,553) 1,553	국(건설부)		
9	〃	1880			제	(1,982) 1,982	(16) 16	농림수산부		
10	〃	공유수면					(371) 0			
합 계		10필지			-	(215,356) 214,969	(215,356) 214,969			

영광군 공고 제2015-529호

영광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

영광군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인가 사전 열람 공고합니다.

2015. 10. 29

영광군수

1. 실시계획 인가 신청의 요지

사업시행지의 위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사업규모	사업시행자	사업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읍면	리	시설의 종류	시 설 명	명 칭 (사업명)			
법성면	법성리	공간시설	공원 (근린공원)	법성면소재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127.5㎡	영광군수 (건설도시과)	실시계획인가일 ~ 2016. 12. 31.

2.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조서 : 다음

3. 관련 설계도서 및 도면 : 영광군 건설도시과에 비치

4. 열람일시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5. 10. 29. ~ 2015. 11. 12.(14일간)

나. 열람장소 : 영광군 건설도시과

5. 의견제출

사업시행지 내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으시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열람 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건설도시과(☎061-350-5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 사업명 : 법성면소재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 유 자		비 고
				공부면적	편입면적	성명	주 소	
1	법성면 법성리	1229	공	10,788.6	10,788.6	영광군		